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200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머 리 말 —

현재 우리의 수출 및 투자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더 절실한 바 그 동안 우리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시각에서 보다 더 폭 넓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호주에 관하여 여행, 유학 및 비자 등에 대한 안내서가 몇몇 소개되어 있으나 호주의 근간을 이루는 전반적인 법적제도 등에 접근을 시도하여 국내에 소개한 것은 아마도 이 책자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풍부한 자원보유국인 호주에 대해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인의 시각에서 호주 그 중 가장 큰 상업도시인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제도 및 관련 사례 등을 조명함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이를 통해 양국의 수출 및 투자환경이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작성에 힘써주신 투자컨설팅팀의 James Rhee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KOTRA 해외조사팀장 엄성필

— 목 차 —

제 1 장	호주의 법제도 (Legal System)	9
--------------	-------------------------------	----------

1. 사법제도(Court System) / 12
2. 소멸시효제도 (Time Limit) / 16
3. 판사 (Judges) / 18
4. Magistrate / 19
5. 사무변호사(Solicitors) / 20
6. 법정변호사 (Barristers) / 22
7. JP (Justices of the Peace) / 25
8. 형사소추 / 27

제 2 장	비즈니스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31
--------------	--------------------------	-----------

1. 임대(Lease)의 중요성과 계약(Contract)관계 / 33
2. 어떤 사업 형태를 취할 것인가? / 34
3. 단독사업자(Sole Trader) / 34
4. 합명회사(Partnership) / 37
5. 회사(Company) / 40
6. 회사의 등록 / 42
7. 회사의 운영 / 45
8. 회사정리절차 / 47
9.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 51
10. 프랜차이즈(Franchise) / 54
11. 사업과 관련한 보험 / 56
12. 거래실무법 / 63

제 3 장 **특허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65**

- 1. 저작권 / 67
- 2. 특허 / 68
- 3. 의장 / 70
- 4. 상표 / 70

제 4 장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73**

- 1. 부동산구입 / 75
- 2. 아파트(Unit)를 구매할 경우 / 78
- 3. 주거용 부동산 매입 / 80
- 4. 부동산 매각의 경우 / 83
- 5. 주거용 부동산 신축 / 86

제 5 장 **민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89**

계약(Contract) / 91

- 1. 계약(Contract)이란? / 91
- 2. 계약체결권자 / 91
- 3. 계약의 요소(Element of Contract) / 92
- 4. 계약조건(Terms of Contract) / 93
- 5. 불공정한 계약(Unjust Contract) / 93
- 6. 계약양식 / 93
- 7. 계약의 구속성 / 94
- 8. 계약파기(위반) / 94
- 9. 변호사의 도움 / 95

금전채무(Debt) / 96

1. 법정절차 / 96
2. 분할상환 명령절차 / 97

채권압류(Garnishment) / 100

1. 채권압류명령 / 100
2. 채권압류명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 101
3. 임금의 압류시에 취해야 할 사항 / 101
4. 채권압류에 대한 분할상환 명령의 효과 / 102
5. 채권압류에 따른 권고사직 / 102
6. 공무원 임금에 대한 압류 / 103

강제집행 / 103

1. 집행달리의 임무 / 103
2. 어떠한 재산이 압류되는가? / 104
3. 압류방법 / 105
4. 강제집행영장 발부시에 취해야 할 사항 / 105

이웃과의 분쟁 발생시의 법적문제 / 105

1. 이웃과 분쟁 발생시의 대처방안 / 105
2. 담장(Fence) 설치문제 / 106
3. 담장 수리문제 / 107
4. 나뭇가지가 이웃담장을 넘어갔을 경우 / 107
5. 이웃이 내 구역을 드나드는 경우 / 108
6. 이웃동물이 내 구역을 침범한 경우 / 109
7. 이웃의 소음공해 / 109
8. 이웃의 소각(Burning Off) 행위 / 110
9. 이웃의 엇보는 행위(Peering) / 110
10. 변호사가 도와주는 일 / 111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 115

1. 체포할 수 있는 경우 / 115
2. 체포방법 / 115
3. 강제연행 / 116
4. 반항하는 경우 / 116
5. 몸 수색권한 / 116
6. 심문 / 117
7. 체포 후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경우 / 117
8. 묵비권 / 117
9. 지문채취 / 118
10. 구금기간 / 118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문제 / 118

1. 피해자 권리 / 118
2. 피해자 조정역할 / 119
3. 형사사건 종류 / 119
4. 법정절차 / 119
5. 보상(Victims Compensation) / 120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 121

성폭행(Sexual Assault) / 122

유아 성폭행(Child Sexual Assault) / 123

일반 폭행 / 123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 124

교통사고(Motor Vehicle Accidents) / 124

재산에 대한 범죄 / 125

1. 도둑맞은 재산 / 125
2. 재산피해 / 126
3. 재산피해가 차량으로 인한 경우 / 126
4. 협박 / 127
5. 범법자에 의한 재산피해 / 127
6.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 / 127

의료 진료시의 법적권리 / 128

1. Medical Consumers Association (NSW) / 128
2. 환자의 권리 및 의무 / 128
3. 진료 필요시 점검사항 / 130
4. 불만 처리기관 / 130

부 록

사례 모음 (Cases)

133

- CASE 1 불공정행위 / 135
- CASE 2 은행약관 / 135
- CASE 3 불공정 행위 / 136
- CASE 4 유사상표 / 137
- CASE 5 잡지내용의 유사성 / 137
- CASE 6 주의의무 태만 / 138
- CASE 7 가게주인의 부주의와 손해배상 / 139
- CASE 8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한 경우 / 140
- CASE 9 파트너관계 / 141
- CASE 10 비밀정보 유용과 손해배상 / 142

- CASE 11 기업정보와 종업원의 책임 / 143
- CASE 12 비합리적 조건 / 144
- CASE 13 파트너의 정의 / 144
- CASE 14 비밀유지의무 / 146
- CASE 15 비밀유지의무 / 147
- CASE 16 고객의 의무 / 148
- CASE 17 부도처리와 명예훼손 / 149
- CASE 18 잘못된 평가와 책임범위 / 150
- CASE 19 불량품과 손해배상 / 151
- CASE 20 공급계약과 손해배상 / 151
- CASE 21 허위광고와 벌금 / 152
- CASE 22 불량차와 손해배상 / 153
- CASE 23 여행경비 반환 및 손해배상 / 153
- CASE 24 계약의무와 이행 / 156
- CASE 25 계약에 대한 오해 / 157
- CASE 26 손해배상 / 159
- CASE 27 동물과 손해배상 / 159
- CASE 28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161
- CASE 29 부당해고 / 162
- CASE 30 부당해고 / 162
- CASE 31 피고용인의 중대한 복종의무위반 / 164
- CASE 32 고용인의 의무 / 165
- CASE 33 원인제공자와 그 책임범위 / 166
- CASE 34 원인제공자와 그 책임범위 / 166
- CASE 35 고용인의 의무 / 167
- CASE 36 고용인의 책임범위 / 167
- CASE 37 고용인의 책임범위 / 168

CASE 38 근로자배상 / 168

CASE 39 근로자배상 / 169

CASE 40 면책조항과 손해배상 / 170

CASE 41 계약성립과 배상 / 171

CASE 42 계약과 채무변제 / 171

CASE 43 세입자의 권리와 반 인종차별 / 172

CASE 44 세입자의 의무 / 173

CASE 45 고용기회와 성차별 / 174

CASE 46 차별대우 / 175

CASE 47 성차별과 인권 / 176

CASE 48 차별행위 / 176

CASE 49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 / 177

CASE 50 청각장애인과 차별 / 177

CASE 51 채용과 성차별 / 178

CASE 52 임명과 인종차별 / 179

CASE 53 차별대우 / 179

CASE 54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 / 180

CASE 55 명예훼손 / 182

CASE 56 채권추심과 협박. 무단침입 / 183

CASE 57 비밀유지의무와 명예훼손 / 184

CASE 58 명예훼손 / 185

CASE 59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 185

CASE 60 신문사의 명예훼손 / 187

CASE 61 명예훼손죄 / 187

CASE 62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 / 188

CASE 63 신문기사와 명예훼손 / 189

CASE 64 법정모독 / 190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CASE 65 살인죄 / 192
- CASE 66 의사의 과실 / 193
- CASE 67 환자의 동의 / 194
- CASE 68 의사의 직무태만 / 195
- CASE 69 의사의 부주의 / 196
- CASE 70 의사의 직무태만 / 196
- CASE 71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 197
- CASE 72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 198
- CASE 73 유언서의 법적효력 / 199
- CASE 74 별거의 의미해석 / 200
- CASE 75 혼인무효 확인소송 / 201
- CASE 76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권리 / 201
- CASE 77 혼인중의 자 / 202
- CASE 78 유언서의 효력 / 203
- CASE 79 '약혼(Engagement)' 과 '결혼(Marriage)' 의 법적지위 / 204

제 1 장

호주의 법제도 (Legal System)

호주의 법제도 (Legal System)

호주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근거를 둔 판사가 만든 법(Judge-made Law)과 의회에서 만든 법(Parliament-made Law)을 들 수 있다.

흔히들 영어를 쓰는 국가의 Anglo-American Law System에서는 판사들의 판결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그 판례가 지금까지도 각종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전통들이 소위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Precedent)'을 성립 시켰으며 이러한 국가들을 우리는 흔히들 보통법(Common Law)국가라고 한다.

대체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반해 한국, 일본 등 역사적으로 주로 법률 조문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의 국가들을 대륙법계 국가라고 한다.

한편, Parliament-made Law를 법률(Legislation, Acts, Statutes)이라 하는데 법률에는 엄연한 위계질서가 다음과 같이 성립되어 있다. 즉, 헌법(Constitution) 각종 법률(Legislation, Acts, Statutes)→법규(Regulation) 규칙(Rules)→조례 또는 내부규정(Ordinances or By Law)의 위계질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는 운영의 묘가 존재한다.

호주는 한국과 같이 단일 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지만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호주의 제반 법률 체계의 이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요구 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1. 사법제도(Court System)

실제로 법률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한 그 사건이 법정에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일반인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호주의 법체계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식의 결여로 인한 것이고 또한 법률 상식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한국의 법 상식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엄연히 법제도상 복수제도(Dual System) 즉, Federal 및 State System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문제를 가지고 어느 법정에 서야 하는가?

대부분의 호주 법정(Court)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을 취급한다. 물론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보상 및 지방정부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재정신청소(Tribunals) 및 위원회(Commissions)에서 다루고 있다.

주 법정(State Courts)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 및 관할권이 나뉜다.

- 하급법원(Lower Courts : Local Courts, Magistrates' Courts, Courts of Petty Sessions)

대체로 모든 법률 사안의 4분의 3 이상이 이곳에서 시작되며 대부분이 또한 이곳에서 끝난다.

소위 치안판사(Magistrates)가 주재하며 배심원(Juries)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 중급법원(Intermediate Courts : District Courts)

본 법원은 판사(Judge)에 의해 주재되며 민사, 형사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을 다룬다.

재판 진행 중에 배심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며, 물론 하급법원으로부터의 항소(Appeals)를 받아들인다.

○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

각 주에 있어서의 최고 법원이다.

하급법원 및 중급법원으로 부터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제소자나 반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을 할 경우, 한명의 판사가 아닌 3명 또는 5명의 판사들이 결심 공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수결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만일 한 당사자가 이곳에서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최종심인 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에 상소할 수 있으나 조건은 그 사건이 법률적으로 또는 헌법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특히, 본 법원에는 예외 규정이 다른 하급법원보다 많으나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지면상 생략한다.

연방법원(Commonwealth Courts)은 다음과 같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기능상 주 법원(State Court)과는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

○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연방법(Federal Law)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기 위해 197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법(Industrial Law)과 파산법(Bankruptcy Law)을 주로 다룬다. 물론 각 주의 Supreme Court에서의 연방정부와 관련된 사안들 즉, 세금 특히 상표권 등에 대한 상소를 받아들인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가정법원(Family Court of Australia)

가족법(1975)상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다룬다.

한 당사자가 이곳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3명의 판사가 주재하는 Full Family Court에 상소 할 수 있으나, 최고 대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에의 상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한다.

○ 최고 대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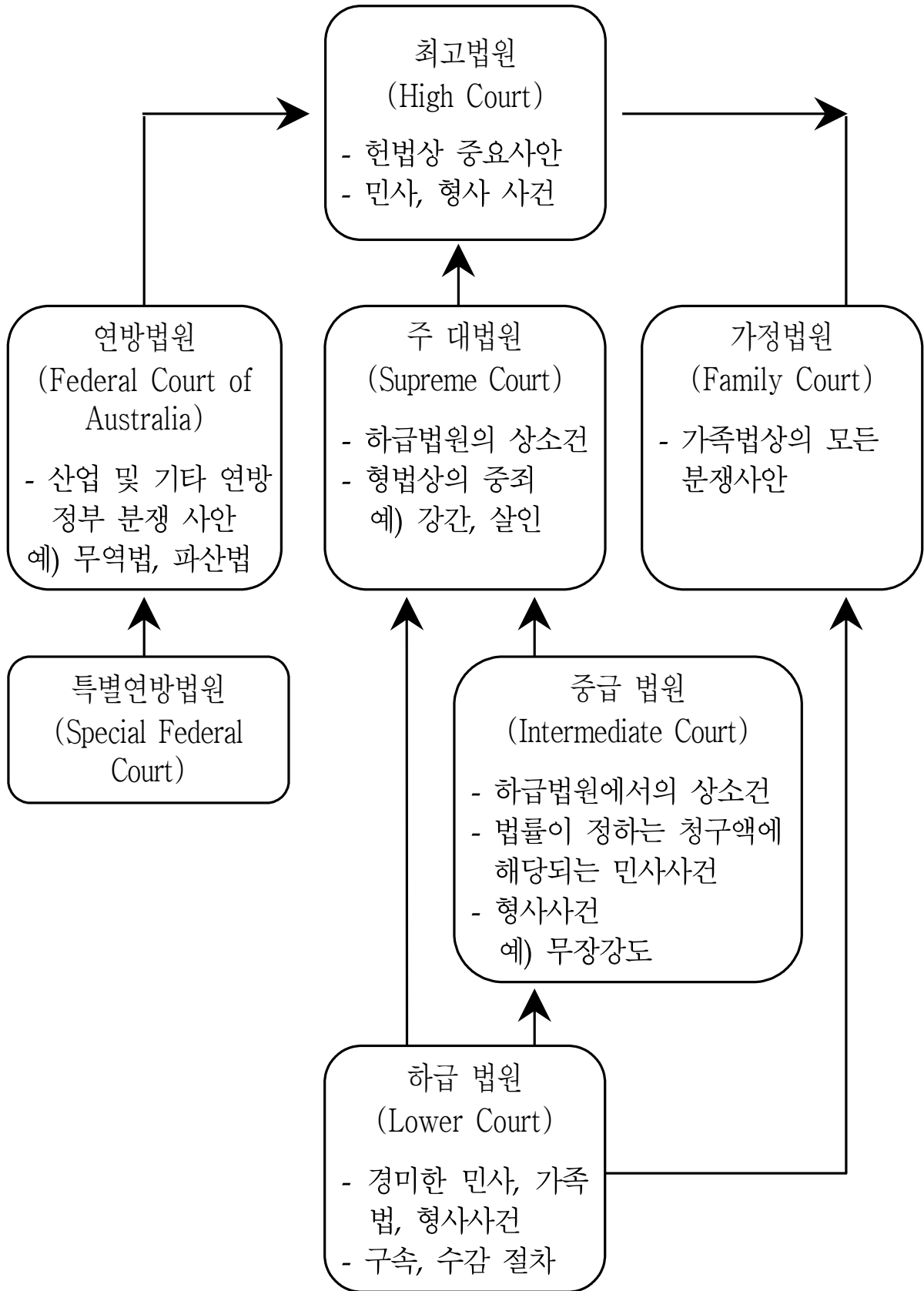
최고 대법원은 글자 그대로 호주 내에서의 최상급 법원이며 현재 호주 수도 Canberra에 소재하고 있다.

헌법에 관련된 사안은 바로 취급하고 있으며 일단 최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모든 법원에 대해 최종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외에 호주에서는 법정 외에서도 특수 분쟁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키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발달되어있는 바, 재정신청소(Tribunals), 조정제도(Conciliation) 및 중재제도(Arbitration)을 들 수 있다.

이상 설명한 호주의 법원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법원)



2. 소멸시효제도 (Time Limit)

소멸시효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호주법상의 TIME LIMIT 제도는 어떠한가?

물론, 법구조상 어느 사람이고 일정 기간 동안 법적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법사상은 '실체적 진실의 구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역시 법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 및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명백히 문자화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호주에서는 LIMITATION ACT, 1969 를 법적근거로 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제소기한을 조문화 시켰다.

물론, 이 TIME LIMIT 제도는 법적기한이 지나면 법적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하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에 관한 제도'라는 차이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TIME LIMIT는 소송의 종류 또는 주와 주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대체로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6년의 TIME LIMIT가 적용되나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극히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3개월의 단기 TIME LIMIT가 적용된다.

이때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이 정한 기한내에 변호사와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후대책 형'이고 법 또는 제도에 익숙해 온 호주사람들은 대체로 '사전예방 형'이다.

그럼 이상 설명한 민사소송에 대한 TIME LIMI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SW주 기준)

호주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개인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그 TIME LIMIT는 6년이지만 국제조약상 정한 해상 또는 상공에서의 사고로 인한 개인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또한 계약상의 채무, 계약위반 등은 그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TIME LIMIT가 6년이지만 서명 날인한 서면계약 인 경우는 12년이다.

이 밖에도 불법침해, 명예훼손, 집세에 대한 분쟁 등은 다소의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6년의 TIME LIMIT 이 적용되나 기타 소송에서의 TIME LIMIT 는 일정치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사안별로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제한을 철회하곤 한다. 물론 그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지체, 상해의 정도,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민사관계가 아닌 형사사안에 대해서는 TIME LIMIT 가 적용되는가가 문제이다.

기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TIME LIMIT 적용 없이 바로 진행되어야만하나 그 범죄의 성격이 약식 기소 범죄에 해당된다면 6개월 내에 형사소추가 이뤄져야만 한다.

3. 판사 (Judges)

소위 "Three Big Brothers" 라고 일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 대부분 호주 판사들은 법정변호사(Barrister) 및 칙선변호사(Queen's Counsel) 출신이며 호주정부의 지명에 의해 임명된다.

역사적인 표현을 빌자면 판사들은 'White', 'Middle Class' 및 'Anglo-Saxon Males'라는 필요충분조건이 선행되었었지만 지금은 '여성판사' 소수민족 출신 판사 등이 차별 없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대한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판사들 중에는 Barrister 및 Queen's Counsel 이 아닌 사무변호사(Solicitor) 또는 기타 Lawyer 출신도 있으나 지금까지 판사를 임명하는 데 지켜온 전통은 '판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법원의 제반 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인 이어야하며, 법정에서 최소한 수 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필요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일단 판사로 임명된다면 그 판사는 '독립된 작은 정부'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흥미로운 것은 대체로 법정에서 판사를 호칭할 때 'Your Honour (Magistrate 인 경우에는 'Your Worship')'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법원의 등급에 따라 호칭이 천차만별이지만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판사의 궁극적인 업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는 데 있다. 즉, 분쟁중의 사안을 가장 객관적으로 투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되 일단 판단이 내려졌으면 어떤 형태로든 판결(Judgement) 또는 법정명령

(Court Order) 등을 내려야하고, 양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불복시 여러 형태의 항소제도가 존재함)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데, 만일 항소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NSW 주에서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을 두어 판사들에 대한 소추신청을 처리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직무능력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또는 법원에서의 판단 실수 등을 이유로 제소 할 수 없고 오로지 법이 규정한 항소제도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상원 및 하원의 표결에 부쳐 판사의 진로를 결정케 할 수 있으며 이때 판사의 권위 및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상·하 양원의 결정전에 판사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케 유도한다는 점이다.

4. Magistrate

Magistrate 라 하면 통상 치안판사 등 기타 하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인다.

즉, Magistrate는 하급법원(Magistrate's Court, Local Courts, Courts of Petty Sessions)의 사법관(Judicial Officers)라는 뜻이 된다.

대체로 Magistrate는 Judge와는 크게 구별되는데, 자격을 갖춘 Qualified Lawyer 라기 보다는 공무원 재직시 자격심사위원회(Admission Board)에서 요구하는 part-time 코스를 이수하면 이후에 Magistrate로 임명되는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점이 일반 법관(Judges)과는 다르다.

물론 South Australia 주에서는 법정변호사(Barrister)에서 Magistrate가 탄생되는 점이 다른 주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끔 서류상 'SM'이라는 표기가 Magistrate의 이름 뒤에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Stipendiary Magistrate'의 약자를 뜻한다. 즉,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급료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었던 Magistrate가 '급료를 받는 하급법원의 판사'로 바뀌게 되었음을 뜻하고 그 이외에 다른 법적인 의미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호주와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하급 판사가 법관으로서가 아니고 '예비심문관(Preliminary Examiner)'로서의 직무를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mmitting Magistrate라고 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무원(Public Civil Officer)의 일반적 호칭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주지사, 시장등을 부를 때도 가끔 Magistrate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5. 사무변호사(Solicitors)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사무변호사인 Solicitor를 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만큼 우리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아무 때고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의사로 말하면 일반의(G.P.)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olicitor는 법정에 출두할 권한이 있으나 일단 법정에서 법률사안이 시작되면 특히 상급법원에서는 법정변호사(Barrister)가 그 역할을 대신

하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르다.

○ 업무범위

Solicitor의 업무범위는 일반적인 한국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통상업무로부터 때로는 한국의 공인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사법서사의 업무 중 법적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문자 그대로 'All Round Player'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통계상으로 보면 Solicitor의 사무실은 혼자서 비서를 두고 운영하는 'Sole Practitioners'로부터 400-500명의 Lawyer들로 구성되는 '합동법률회사'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의 Solicitor는 소위 동업변호사인 'Partner'와 고용변호사인 'Employed Solicitor'로 크게 나뉜다.

따라서 보통 법률회사의 경우 그 곳에서 발행하는 안내서를 잘 살펴보면 그 소속 변호사들의 주요 취급업무 및 직위, 경력 등 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신중하게 살핀 후 본인들의 법률문제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 자격요건

우선 Solicitor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졸업하고 소정의 실무 연수를 마치면 Supreme Court에 의해 Solicitor 자격이 부여된다. 이때 Solicitor 자격증만을 가지고는 바로 개업을 할 수는 없으며 Law Society로부터 매년개업을 해도 좋다는 증명서인 'Practising Certificate'를 갱신,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풋내기 Solicitor들은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로부터의 감독하에 피고용인으로서 소정의 경험과 경력을 쌓은 후야 Partner로서 또는 Sole Practitioner로서 활동할 수 있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Solicitor들은 수많은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인 의무들을 고객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에 관한 모든 제반 강령은 NSW 주의 지침서(Solicitor's Manual)에 잘 나타나 있다.

○ Law Society

Law Society는 Solicitor들의 감독기관으로서 한편으로는 Solicitor들을 대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Solicitor들의 업무수행기준을 설정하며 이에 위반되는 Solicitor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즉 Law Society는 개업증명서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존의 Solicitor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Solicitor들의 비행 및 도덕적 의무위반 등을 감독하는 권익단체이다.

6. 법정변호사 (Barristers)

일반적으로 NSW 주의 변호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Solicitor이고 다른 하나는 Barrister이다.

호주 특히 NSW 주에서는 Solicitor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바 이를 법정변호사(Barrister)라고 한다.

물론 Solicitor들도 고객의 편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하급법원(Lower Court)에 한한다. 즉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특히 상급법원에서는 Solicitor는 고객의 편에서 Barrister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이 점이 Solicitor 와 Barrister를 구분하는 차이점이다.

바뀌 말하면 고객들 중 법적자문을 구하기 위해 Solicitor를 거치지 않고 바로 Barrister를 찾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Barrister는 Solicitor에 의해서만 선임되어 소송에 임할 수 있다.

○ 업무범위

Barrister의 업무범위는 주로 Solicitor들이 가져다주는 고객들의 법적사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Barrister 들 역시 판사들처럼 법정에서 가발 및 가운을 착용한다는 점이다.(하급법원인 Magistrate's Court 및 가정법원은 예외)

참고로 Barrister는 Solicitor처럼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일련의 사무실들을 서로 나누어 쓰고 공동으로 비서 및 서기 등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 때 이 일련의 사무실들을 'Chamber'라고 한다.

또한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바로 Barrister를 Solicitor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인데 실제 의학상의 일반의(G.P.)와 전문의(Specialist)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로 본다. 즉,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법대를 졸업한 것 졸업생이 하자가 없다면 Barrister를 지원하는데 하등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업무상 Solicitor의 업무를 파악하여야만 그 역할 및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Barrister 들은 Solicitor의 경력을 적어도 수년간 보유하고들 있다.

참고로 일단 Barrister가 된 후에라도 Solicitor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데 이때 Barrister중 Solicitor가 되길 원하는 지망생들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소정의 Barrister경력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고 있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자격요건

우선 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자격 심사위원회(Admission Board)에 지원하면 된다.

이때 Solicitor의 경우처럼 소정의 법무연수(Practical Legal Training)가 필요치 않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참고로 Victoria 주에서는 Barrister로 활동 전에 특별히 법무연수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 Queen's Counsel

흔히 경력이 많은 고참 Barrister를 칙선변호사(Queen's Counsel)라 칭하는데 이 Queen's Counsel(QC)의 옷이 실크로 만들어진 전통에 따라 때로는 'Silk'로서도 통용된다.

QC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Barrister 개개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며 법무장관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일단 QC 승인이 법무장관으로부터 나면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이뤄진다.

법률사안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대형사건은 대체로 Solicitor에 의해 QC에게 직접 맡겨지는데 그 선임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Barrister를 선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장은 주로 Solicitor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소송 전에 Solicitor에게 소정의 소송비용을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 Bar Association

Barrister들의 권익단체로서 Solicitor들의 권익단체인 Law Society와 기능이 유사하다.

7. JP (Justices of the Peace)

역사적으로는 군, 시 또는 읍의 하급법원에 있어서 약식재판(Summary Proceeding)의 권한을 가진 법관으로서 소위 '치안판사'로 불려졌다.

JP 는 처음 14세기에 영국에서 일정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임명되고, 일정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비교적 경미한 민사 및 형사의 소송사건을 재판하는 권한 및 중죄(Felony)를 다루는 형사사건의 예비심문(Preliminary Examination)을 할 권한을 가지며 또 피의자의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류하고 또 보석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JP는 2인 이상으로서 합의제의 '치안법원(Session of the Peace)'을 구성한다.

한편 영국의 치안판사는 국왕의 특임 또는 시장, 읍장, 장로의원 등의 겸직으로 명예직이다.

미국의 치안판사는 주지사의 특임, 시장, 읍장, 장로의원 등의 겸직 또는 일반시민의 선거에 의해 유급제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미국에서의 치안판사에 대한 명칭은 주에 따라서 다르며 치안판사를 단순히 'Justice' 또는 'Magistrate' 라고 할 때도 있다.

○ 기능

호주 역시 영국의 JP제도를 답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주의 여러 연방 재판 관할권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은 명예직이다.

기능상으로는 호주 사법제도상 전통적으로 사법적 및 행정적 두 개의 커다란 기능을 가지는데 사법적 기능 즉, 죄목 및 책임을 가리는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재판관할권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존재한다.

NSW주에서의 그 기능의 범위는 Justice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실제 NSW주에서는 JP의 양산으로 인해 그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즉, 요구되는 기능상의 범위보다도 더 많은 JP의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JP의 실제 업무영역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기본적으로 JP는 실제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사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 오직 제한된 행정적인 기능을 가질 뿐이다.

역사적으로 고유의 업무인 영장을 발부하고 소환장을 발급하는 기능을 이제는 NSW주에서는 법무장관이 선임한 자격을 갖춘 치안판사(Authorized Justices)만이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 역할

JP의 역할은 대체로 서류상에 증인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양식이 적절하여 관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JP는 각종 선서(Oath Declaration)등을 주재하며 그 서류가 진실된 서명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때, JP는 그 서류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 서류가 적절히 완성되고 서명되었다는 것만을 보증하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자격요건

신청서는 주 국회(State Parliament)의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작성 송부할 수 있는데 이때 신원보증서(References)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기존 JP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범죄 전과 또는 교통사고 기록 등은 JP가 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

합격된 지원자는 JP로서 하급법원에서 선서한 후 임명되는데 이른바 충성의무 선서(Oath of Allegiance)를 하게 된다.

NSW주에서는 JP를 위한 특별 교육이나 연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JP에 대한 연수기관(JP Tutorial Service)에서 전반적인 업무지침을 교육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JP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궁금한데 전화번호부의 Yellow Pages를 보면 Justice of the Peace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하급법원이나 때로는 은행 약국 등에서도 JP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서류상의 JP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8. 형사소추

실제 형사소추 절차는 민사절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형사소추 절차에는 몇 가지 형사법상의 원칙이 있는데 권리주장이라는 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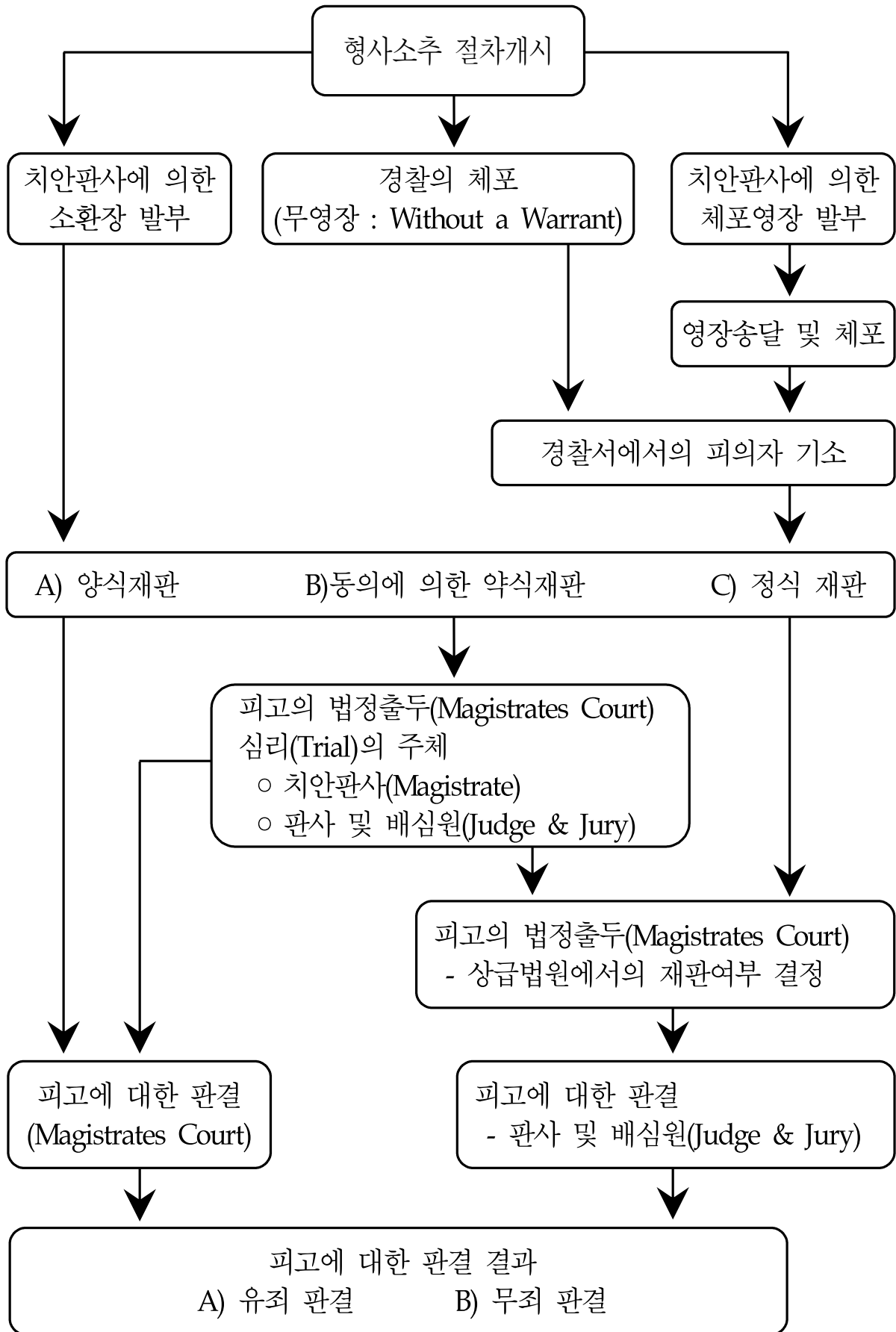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피고는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는다.
- 피고는 본인의 범죄 실행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소가 중지 되어야한다.
- 피고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는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단 피고가 유죄선고를 받으면 형의 언도시에 과거 전과기록을 참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증거는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 증거는 대체로 구두로 된 것을 채택해야 한다. 즉, 서면증거는 반대 심문(Cross Examination)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는 그 사안에서 채택된 증거만을 보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사안에 대한 추정 보도 등을 할 수 없다.
-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Double Jeopard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범죄사안에 대해 일단 무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제 2 장

**비즈니스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비즈니스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1. 임대(Lease)의 중요성과 계약(Contract)관계

흔히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길목 좋은 곳을 물색하기 마련인데 비즈니스 운영 장소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Key Point 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임대계약(Lease Contract)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각 규정 및 그 숨은 뜻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원래 건물소유주(Landlord) 또는 임대인(Lessor)과 임차인(Lessee)간의 계약을 동일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서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상황을 방조하는 경우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내용 중 본인이 원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나, 특히 쇼핑센터 내에서 임대를 원할 경우에는 경쟁업소는 없는지, 영업시간 및 기타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한 제약요건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임대시 임차인(Lessee)는 임대장소 및 설치물 등을 유지보전해야 하며 임대료(Rent) 지불에 대한 제반 규정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물론 임대료 인상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후일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책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결국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결점이 있을 경우 본인이 나중에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비즈니스를 판매하는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후일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조건들을 분명히 명문화하는 것이 비즈니스 운영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Retail Tenancies Code 참조)

2. 어떤 사업 형태를 취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각각 법적 및 회계측면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른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서는 어떻게 세금(Tax)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 어떻게 이익(Profits)을 분배하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사항들은 곧 본인들의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 하는 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3. 단독사업자(Sole Trader)

단독사업자(Sole Trader)라 하면 문자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우를 뜻하며 구멍가게 주인, 배관공, 페인트공 등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가장 특징적인 요인으로서, 비즈니스 운영시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 채무(Debt)에 대해 항상 독자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비즈니스 운영에 실패하여 파산(Bankruptcy) 하였을 경우, 단독 사업자(Sole Trader)의 개인 자산(Assets)역시 금전채무를 변제키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단독 사업자들은 관계당국 즉, Licensing Authority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관공의 경우 소정의 코스를 이수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변호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소정의 코스를 이수하고 관계 당국인 Law Society로부터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Practising Certificate)을 취득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상호(Business Name)

단독사업자들은 개인의 성명을 상호(Business Name) 로 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별도의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성명이외에 다른 명칭이 상호로서 사용될 경우, 예를 들어 Lee Computer Consultancy라는 명칭을 상호로서 사용하였을 경우 관계 당국인 Registrar of Business Names에 상호를 등록하여야만 한다.

물론 상호가 등록이 되면 모든 비즈니스 관련 편지, 영수증 기타 고무인등에 반드시 등록된 상호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상호를 어디에 등록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진술한 바와 같이 Registrar of Business Names, Corporate Affairs Commissioner 또는 법원서기에 일정한 신청양식 및 소정의 비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참고로 회사명은 하나의 인격체에 대한 고유이름과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하다.

보통 회사명에는 'COMPANY'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그 차체에서 그 회사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

즉,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명 마지막에 'PTY LTD'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사(Proprietary Company)로서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즉, 'Limited'로 복합형태의 것으로서 이해하면 된다.

단, 회사의 목적이 영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 과학, 종교, 자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상호에 'Limited'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상호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볼 때 혐오감을 준다거나 또는 이미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상호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피하여 회사명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할 회사명으로서는,

- 왕족과 관련한 회사명일 경우(Royal, King, Queen, 또는 Crown 등)
- 호주정부와 관련된 회사명일 경우(Commonwealth, Federal, State, Empire, Imperial 또는 National 등)
- 외국정부 또는 UN과 관련한 회사명일 경우
- 지방정부와 관련한 회사명일 경우
- 다음 단어를 포함하는 회사명일 경우 즉,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Consumer' 'Co-operative', 'Stock Exchange', 'Trustee' 또는 'University'

- 장애인 또는 국방 목적의 단체와 관련한 회사명일 경우
- 원래 목적의 사업과는 거리가 먼 회사명으로서 일반인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 등등이다.

물론 회사명은 관계기관인 회사등기담당자(Registrar of Company)의 허락이 있는 경우 바꿀 수 있다.

○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서, 사업 운영시에 단독사업자에게 별도의 정부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세금 문제를 제외하면 사업상 이익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작용하기에, 결국 사업 운영시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운영하기 쉬운 점이 매력이 된다.

단점으로서, 본인의 금전채무에 대한 전적인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은행 기타 용자회사와의 두꺼운 벽 때문에 필요 자금을 염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세금문제에 있어서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는 것 역시 단점으로 작용한다.

4. 합명회사(Partnership)

합명회사 또는 조합은 영리목적은 가지고 각각 금전, 동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한 공동 소유자(Co-owner)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2명 이상의 사람사이의 계약관계 또는 이런 사람들의 단체를 뜻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즉, 사회적 필요와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 하겠는데, 다른 각도로 본다면 수입을 각 개인에 분배하고 이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를 가지기에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등이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합명회사의 형태를 갖출 경우에는 파트너들 간에 회사운영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정 한도를 넘는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고용인을 해고 시킬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 할 것인가?

이 경우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각 파트너들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일등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꾸어 말하면, 파트너 중의 한명이 다른 파트너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계약에 서명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채무(Debt)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들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이 파트너 간에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 파트너들의 성명
- 비즈니스의 목적 및 상호(Business Name)
- 본 계약서 내용을 다시 협의하기 전 까지 최소한 지속되어야 할

회사의 존속기간

- 각 파트너들이 투자하여야 할 자본 및 이자분배
- 어떻게 이윤이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
- 각 파트너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수준
-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의 각 파트너들의 역할
- 회계장부의 정리 및 보존
- 파트너의 사망 또는 파산(Bankruptcy)의 경우에 대비할 사항
-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파트너의 영입에 관한 사항
- 파트너들의 탈퇴문제
- 회사정리 및 자산(Asset)분배문제
- 파트너들 간에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이상과 같이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할 기본 사항들을 열거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파트너들은 회사운영시 발생한 금전채무(Debts)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기본 입장이다.

○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서, 단독 사업자(Sole Trader)보다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고, 운영상 보다 전문적인 기법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독 사업자의 경우처럼 정부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것과, 세금 부문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서, 전술한 파트너들의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뿐만 아니라, 파트너들 간의 분열로 인한 와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또한, 비즈니스가 오래 존속되거나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성격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다.

5. 회사(COMPANY)

일반적으로 회사(Company)라 하면 단독사업자(Sole Trader) 또는 합명회사(Partnership)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존속되는 법인체(Legal Entity)이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계속 존속한다는 뜻이 된다.

단지, 회사가 존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사등록명부에서 회사이름을 없애버리는 방법뿐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만일 20명 이상이 모여 영리를 위한 비즈니스를 운영코자 할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는 사실이다.

단, 변호사 또는 건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적용된다.

○ 종류

회사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Proprietary Company와, 일반에게 공개되어 운영되는 Public Company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로서 부부가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그 부부는 단 2명뿐인 주주가 되는 셈이다.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50명이 넘는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였

을 경우 반드시 사회사(Proprietary Company)가 아닌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형태를 갖추어야 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의 공개회사(Public Company)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라든가 정부기관이 아님은 물론이다.

사회사(Proprietary Company)의 주주는 주식을 임의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반하여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경우에는 최소한 5명의 주주와 3명의 이사 및 1명의 회사 임원(Company Secretary)을 두어야 만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나 단,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법규상 특별한 규제가 있으며 전문성을 띠는 분야이므로 지면상 생략한다.

○ 책임의 한계

이 분야는 회사에 금전채무(Debt)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느냐 또는 무한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 및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만일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각 주주는 각 개인의 회사에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고 그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합명회사처럼 주주 각 개인의 책임한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회사의 이사가 물품을 개인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 회사의 기능상 분류

기능상 다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눈다.

- 단독사업자 또는 일련의 파트너들이 운영하는 회사
- 일반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함 없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
- 사교 또는 자선목적의 비영리 단체(회사)
- 국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호주국영방송(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 공개회사의 자회사

6. 회사의 등록

모든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떠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발기인(Promoters)이라 하는데, 발기인들은 발기인의 활동영역인 영업기획 발굴, 그 경제적 가능성의 조사, 필요자금 및 필요인원의 모집뿐만 아니라 회사 등록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기본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영국이나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회사의 기본정관으로서 미국의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해당한다.

기본정관에는 회사명칭, 등기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목적 외에도 회사의 종류에 따라 사원의 책임이 유한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다.

기본정관이 회사등기 담당자(Registrar of Companies)에게 제출되어 등록되면 회사등기담당자가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에 기재된 설립일자로부터 법인으로서의 회사가 존재하게 된다.

○ 통상정관 (Article of Association)

영국이나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기본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에 규정되는 사항 이외의 것을 규정한 정관을 뜻한다.

통상정관에는 주식자본, 주주총회, 임원 이익배당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통상정관은 기본정관과 함께 회사등기담당자에 제출하여 등기를 해야만 한다.

○ 사무소 소재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재지는 일반인이 인식하고 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면 되고 반드시 회사가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만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가끔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할 시에 마땅한 주소가 없다면 그 회사의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대신 하여도 좋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렇다면 호주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호주 내에 대리인(Agent)을 두었을 경우 그 대리인 역시 등기를 하여야만 할 것인가?

통상 호주 밖에서 설립되고 호주 내에 대리인을 두었을 경우, 그 대리인이 회사의 통상업무(Regular Business)를 수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 회사 자본금 (Company Capital)

일반적으로 회사는 운영상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첫째는 주주(Share Holder)로부터의 자금충당이 우선하고 두 번째로는 은행 기타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게 된다.

이때 전자를 Share Capital이라하고, 후자를 Loan Capital이라고 통상 부른다.

명목상의 자본금 즉, Nominal Capital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역시 철저히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일정 금액의 주식수로 나뉘게 되고 따라서 주당 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수권자본금이 \$1,000,000 이고 주식 수 또한 1,000,000 주라면 결국 주당 가격은 \$1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수권 자본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수권자본금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쉽게 증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미를 갖는 것은 수권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발행된 자본금인 Issued Capital이다.

흔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는 외부적인 즉, 정치,

경제, 사회 기타 요인에 의해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 및 회사의 성장내용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 이익 배당금 (Dividends)

이익배당금 이라하면, 문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할당 하는 배당금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진 측에서는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배당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주주총회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에서 결정된다.

7. 회사의 운영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회사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주 모두가 회사 운영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사들은 엄격한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 본분의 책임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접촉될 수 있으며 상당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Mr. Kim이 A라는 무역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또한 경쟁회사인 B무역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본질적으로 이사의 본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로 일을 해야 하는바, 이익의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역시 엄격한 법적제재가 뒤따른다.

결국 Mr. Kim은 A, B 경쟁 무역회사의 이사직 중 한 직책을 포기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다.

○ 주주총회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는 엄격한 법적절차가 따르게 되는데 즉, 회의 소집통보, 절차, 결의사항 및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요건이 적용된다.

흔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주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의사에 반영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사의 퇴진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기타 회의의 종류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 회사직인 (Common Seal)

통상 회사는 회사 고유의 직인을 보유하게 되는데 회사 직인에는 반드시 회사명이 새겨지게 되고 이것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회사의 '서명 (Signature)'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회사 직인이 서류에 찍히면 그때부터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8. 회사정리절차

○ 사업의 종류

일반적으로 단독사업자(Sole Trader) 또는 합명회사(Partnership)인 경우에는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바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단,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구성원인 파트너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회사의 사업종료인 경우인데, 단독사업자 또는 합명회사와 어떤 법적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가에 있다.

대체로 회사의 사업종료인 경우, 법률용어를 빌리자면 '회사정리'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회사와 관련한 채권회수, 재산환가,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뤄진다.

○ 회사정리 절차

회사의 정리절차는 단독사업자나 합명회사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즉, 회사정리는 바로 회사등기부에서 회사이름이 제명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우리가 호적등본에서 제명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회사정리시에는,

첫째, 회사자산이 현실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둘째, 재산환가 즉, 회사 재산 및 자본은 즉시 현금화시켜야 하며,

셋째,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가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잔여재산 또는 잉여자금이 남아 있을 시에는 주주들에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게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과연 A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사명 뒤에 '회사정리 절차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회사명 뒤에 'IN LIQUIDATION'이라는 문구가 모든 회사의 서류 즉, 송장, 주문서 및 서신 등에 명기되므로 이를 모르고 그 회사와 거래한 경우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정리 절차시에는 회사의 이사 및 사원들의 기능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가 또한 문제이다.

이때에는 법이 규정하는 청산인이 모든 기능을 떠맡아 수행한다.

○ 적용대상

회사정리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완성되면 진행된다.

첫째, 회사 설립 후 1년 내에 회사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둘째, 회사운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셋째, 회사 구성원 수가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넷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이거나,

다섯째, 법원명령에 의하거나,

여섯째, 회사의 특별결의에 의하거나,

마지막으로 법령에 의할 경우 등이다.

○ 종류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는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

첫째, 법원에 의한 정리

둘째, 임의정리

셋째, 법원 감독에 복종하는 정리 등이다.

첫째와 셋째의 경우는 두 번째의 경우와 대비하는 의미에서 비임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채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정리는 회사가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 즉, 사업을 전환한다거나 할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히는 때에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사업전환을 위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록 회사의 법적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등기담당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회사이름을 바꾸거나, 단순히 회사의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임의정리

일반적으로 회사를 임의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때는 회사법상 총회에서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특별결의는 참석인원의 75%의 찬성을 요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의가 회사를 정리하는 안건을 다룬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21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원들 간에 임의로 회사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스스로 청산인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사원들 스스로의 회사정리가 아닌 채권자들의 요청에 의한 임의정리일 경우는 채권자 스스로 청산인 및 조사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 강제정리

강제정리라 하면 문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뜻하는바 신청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
- 채권자
- 청산출자자(Contributor)
- 관계 장관
- 청산인(Liquidator)
- 회사의 매니저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회사정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관보 및 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청문회의 시간 및 장소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일반 법원에서 직권 명령으로서 회사정리를 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동안 유지해오던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채권자의 이해관계 또는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청산인이 회사운영을 계속하도록 법원이 허여를 하더라도, 일반

적으로 회사는 거래선과 비즈니스를 중지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일단 법원명령이 발동되면 회사는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 또한 타인에게 할 수 없으며, 사원의 직책 등에 대한 상태마저도 변동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법원의 허여가 별도로 있다면 문제는 없다.

○ 절차

- 임의정리일 경우

- 회사정리에 관한 총회소집
- 청산인의 총회소집/청산인의 보고 - 7일 이내
- 회사해산 - 3개월 후

- 강제정리일 경우

- 청산인의 회사재산 분배
- 청산인의 법원명령 신청
- 회사해산

9.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 고용주의 입장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본인들은 공평 정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 피고용인들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들 말하나 사회기준이 변천됨에 따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규정을 위반할 공산이 크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즉,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고용주의 명예와 비즈니스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그룹에 공평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이나 정책을 폼으로서 특정인을 간접적으로나마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이다.

만일 고용주가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피고용인들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 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경우 그러한 정책은 수많은 비영어권배경(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을 가진 소수민족들이 고용주와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을 배척하게 된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은 피고용인들이 해당 고용주의 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간접적 인종차별(Indirect Race Discrimination)’을 근거로 클레임을 요청 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현금거래 등에 어려움을 느껴 결과적으로 모든 파트타임직원들을 해고시키기로 결정했을 경우, 대부분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파트타임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은 피고용인인 여성근로자는 해당 고용주의 정책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간접적 성차별(Indirect Sex Discrimination)’을 근거로 클레임을 요청 할 수 있다.

○ 주의사항

비록 상기와 같은 Case를 통해 보듯이 자칫하면 비즈니스 세계에 엄격한 원칙을 정하는 것 같아 보이나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평한 기회(Equal Opportunity)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동 Anti-Discrimination Act의 법의 취지는 상기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적법절차 및 실무 등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단순히 말하는 자체로는 충분치 않으며 피고용인에 의해서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확신시키는 것 또한 고용주의 책임이다.

참고로 고용주의 중간 책임자 예를 들면 매니저 등이 직원을 모집한 후 특수위치에 임명할 때 불법적으로 차별대우를 하였을 경우, 최고 경영자인 고용주 역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경영층 및 중간 관리자들도 역시 동 법의 복잡다단한 부분을 심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 법 준수요령

법 준수요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즉,

- 직원 중 특정인을 지명하여 고용주의 정책이 과연 '기회평등'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여야 하며,
- 또한 내부적으로 특정인을 지명하여 노사간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면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동 법의 내용을 숙지케 하여, 작업장에서 어떠한 행동은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등을 구별케 하여야 하며,
- 고용인의 모든 작업절차 및 실무 등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해 체크 하여야 한다.

10.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징(Franchising)이란 개인, 동업 또는 회사로 하여금 이미 존속하고 있는 비즈니스 기치 하에 독립 비즈니스 운영을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주의할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 이전에 본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 즉, 사업적인 명성, 각종 기록 및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동시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광고비 및 후원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프랜차이저(Franchisor)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판매조건(Terms of Sale) 등인데, 이때 재고 등을 본 프랜차이즈 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상기조건 등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를 Franchise Agreement라 한다.

그 내용은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Franchisor와 Franchisee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법적계약(Legal Contract)으로서 미래의 수입 및 그에 대한 보장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영업권 (Good Will)

영업권이라 하면 법적으로는 고객 관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 등을 총칭한 것으로서, 영업 계속중 획득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에선 영업장소 즉, 흔히 '길목이 좋다'는 부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혹은 그 비즈니스의 상호(Business Name)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제품의 특성이나 직원들의 능력 또는 독점성향을 가질 경우에도 영업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업권은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법률문제는 대개 그 양도에 관련하여 발생되나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그 비즈니스의 소유주가 경영을 부실히 함으로서 평판이 땅에 떨어진다가, 경쟁업체가 가까운 거리에 생기거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가 수정 된다거나, 기타 프랜차이즈 계약 등이 취소된다거나 하는 미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에 문의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데, 보건성 규정에 부합하는 카운슬 라이선스, 또는 공장/가게 라이선스, 담배 소매 라이선스(Tobacco Retailer's License), 우유판매 라이선스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에 의해 상기 라이선스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상기 라이선스를 원할 경우 새로운 허가(Permit)나 라이선스를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부수수료(Government Fee)를 지불해야 한다.

○ 보험

비즈니스 운영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으로서는 근로자 보상에 관한 Workers' Compensation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밖의 보험을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화재, 도둑, 개인상해, 손해보험 등에 가입을 함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업인 경우 동업자에 대해 발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생활 수 있는 죽음이나 은퇴 등을 예상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 인수

인수시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권리 등인데, 예로서 각종 휴가 즉 Long Service Leave, Sick Pay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 주인과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협상을 거쳐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직원중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등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은 비즈니스 인수시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 있지만 아무도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기존 직원이나 전 주인등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특별정보나 비밀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바로 인접거리에 세우는 경우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11. 사업과 관련한 보험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창고에 쌓아 둔 재고품이 도둑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화재에 의하여 소실될 수도 있을 것이며, 종업원이 갑자기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기의 위험 등은 적절한 보험으로 상쇄될 수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보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 일반 배상 책임보험

통상 일반 공중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어떠한 형태의 사업에도 내재할 수 있다.

즉, 정육점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변질된 고기를 팔수 있을 것이며, 건축업자도 통행인들이 잘 지나 다니는 곳에 건축설비를 남겨 놓을 수도 있을 것이며, 상점에서는 손님들의 통행로에 물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기 사례에서 손님 또는 통행인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상 필수적인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근로자 재해 보상보험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험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있다.

○ 현금 보호보험

사업상 필요한 현금의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은행과의 정기적인 입출금시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채권 보호보험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 간접 손해보험

일반적으로 법적인 표현을 빌자면 피보험 이익에서 생긴 손해가 직접 손해이고 그 이외에서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인데, 보험자는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보전책임을 지고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 구매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고객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겨난 보험의 한 종류이다.

○ 저작권 보호보험

일반적으로 출판업자, 인쇄업자 등은 예견치 않았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험을 들게 됨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 명예 훼손보험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보험과 함께 명예훼손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출판 관계상 때로는 일개인의 신상에 대해 명예훼손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험의 한 종류라 보면 된다.

이 경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고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수출입 보험, 화재보험, 농작물 및 가축에 관한 보험, 생 산품 책임보험 등 사업상 관련되면서도 다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보험 등이 거의 완벽하게 제도화 되어있다.

○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

첫째,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 28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28일을 넘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둘째, 경찰에 보고를 한 후 지체 없이 개인상해 청구양식을 작성, 상해를 입힌 운전자 및 해당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셋째, 상기 경우 의사진단서 및 고용주의 급여명세증명서 등을 첨부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

넷째, 만일 사고 책임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호사와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약 10여개에 달하는 제3자 보험회사가 NSW에 존재함 으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확인하는 일 부터가 급선무이다.

문제는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이다.

만일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법원에서 산정한 부분만큼 감해진다.

만일 본인이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든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사실을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알았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감해질 수 있다.

만일 본인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제3자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므로 사고발생 후 피해자 측에서 배상청구가 예상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항상 긴밀한 협조하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먼저 본인이 과실을 상대방에게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액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동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바 그 내용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즉,

- 사고발생일, 시각, 장소
-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 주소 및 증인 확보
-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제조회사, 등록번호 및 기타 제 3자 보험 회사 현황
- 사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 이름 및 담당 경찰관 이름
-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조치내용
- 후송되어 입원한 병원이름, 병원 입원일수, 담당의사 이름 및 주소, 상해내용 등
-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급여상실내역 및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 본인이 연루된 다른 사고내역
- 병원, 앰블런스, 의사, 약국 등의 비용청구서 사본

- 사고로 인한 향후 비용발생 내역
- 본인의 자동차면허증 번호
- 사고로 인하여 수령하게 된 근로자 상해보험, 사회복지수당 및 기타혜택 등이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만일 청구양식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 되어졌다면 보험회사는 본인의 청구자체를 기각하거나 또는 청구내역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동 건과 관련하여 법원 청구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Motor Accidents Act는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본건을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에 청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가입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고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수입의 손실까지도 보상한다.

만일 본인의 피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재활서비스까지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상기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고발생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 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면 굳이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단 합의점에 이르러 배상액에 대한 협상시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일반적으로 근로자 상해보상 청구에는 임시직, part-time을 포함한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Workers' Compensation Act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만일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후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당사자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하려면 근로자가 작업과 연관된 상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작업환경 때문에 야기된 질병 즉, 청각장애, 천식, 또는 질병의 재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작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Workers' Compensation Act 하에서 청구 가능한 경우를 들면,

- 통상 26주에 해당하는 임금
- 향후 지급
- 의료비(약, 병원비, 물리치료비 등)
- 일시 보상(신체의 일부분에 영구적인 불구상태가 야기될 경우로서 Compensation Court에서 결정됨) 등이다.

만일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는데 모든 작업장에는 상해에 관하여 기록, 유지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는 고용주나 보험 회사로부터 청구양식을 구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 양식이 완성되면 의료기록 증명과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피고용인의 클레임 및 의료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7일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클레임 청구일로부터 21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로부터 수령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합의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부되거나 또는 은행구좌로 이체되는데, 비록 보상을 수령하였을 경우라도 기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도 법적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문제는 만일 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인 Work Cover Authority는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당사자의 클레임에 대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분쟁 중재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상기 분쟁을 Compensation Court로 하여금 해결토록 할 수 있으므로 Work Cover Authority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당사자 클레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Compensation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용인의 손해가 고용주의 태만으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Workers' Compensation Act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Common Law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일단 일시불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더불어 취할 수 있는지 사전에 법적자문을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12. 거래 실무법

아마도 일반인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제반 법률문제 즉, 상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조문화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래실무법이다.

이 법은 제조업자, 공급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등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윤곽이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이법은 특별한 경우에도 그 진가를 발휘하지만 특히 이 법의 주목적은 거래시장의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 자유경쟁을 본질적으로 상쇄시키는 그러한 계약이나 상거래를 금지시키고,
- 가격담합을 미연에 방지시키며,
- 독점거래 또한 허용하지 않는데 있다.

물론 이 법은 상당히 복잡다단하며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한다.

제 3 장

**특허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특허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엇인가를 새로 발명하거나 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발시킬 능력 등을 갖고 있다거나 할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능력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입장 또한 상당하다.

즉, 법의 취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발명을 한 개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흔히들 그러한 아이디어 등을 공업 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재산과 동일시 된다.

통상 공업 소유권의 보호는 저작권, 의장, 특허 및 상표의 네 가지 분야로 구별되는 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저작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하면 회화, 조각 같은 예술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지며, 그를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역시 저작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2.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라 하면 발명, 발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다.

즉, 특허권이 허여되면 이에 따른 제조, 사용, 활용, 판매 등에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특허권자는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특허명세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일단 특허 출원이 되어 특허청에 등록이 된 후 과연 몇 년 동안이나 그 권리를 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후 16년 동안 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바 특허를 이용한 제조, 사용, 이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또 다른 문제는, 특허 출원시, 이 발명이야 말로 이전의 발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발명이라는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분야는 법률적, 과학적, 기술적 분야가 혼합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적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데 실무적으로는 변리사 또는 특허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 및 비용은 특허청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자기가 발명한 아이디어를 특허화 하는데 최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경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또한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조건부 명세서' 및 '완전명세서'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단 조건부 명세서를 접수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시키게 되는데, 결국 이는 접수시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취지이다.

이때, 조건부 명세서에는 충분한 기술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이 보다 완벽한 명세서를 먼저 제출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특허권을 허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명세서를 제출한 사람은 1년의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과연 계속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와 더불어 비용문제 즉, 조사비용 및 완전명세서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그 명세서가 유일무이한 것으로 접수가 되면 특허청은 관련 간행물에 이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3개월 내에 이의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호주 내에서 허여된 특허권은 호주 내에서만 유효한가 아니면 외국에서도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호주 내에서의 특허권자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보호조약을 체결한 다수 국가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일단 호주 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상기 기술한 제반 절차 및 비용 때문에 대체안으로서 간이 특허제도를 호주에서는 1979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는 바, 이의 특징으로서는 특허 출원기간이 짧다는 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및 상업 사이클이 짧은 발명품에 적절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간이특허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6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모든 절차 및 방법은 일반 특허에 준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3. 의장

일반적으로 공업 소유권법상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이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적 특징을 말한다.

물론 의장 역시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의장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과연 어느 부서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가?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으나, 실무적으로는 Design Office에서 관할하고 있다.

대체로 의장은 최고 15년까지 보호를 받으며 특허출원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의장을 위한 조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참고로 호주와 '의장조약'을 맺은 국가에 의장을 등록할 경우 의장권자는 6개월간 우선권을 갖는다.

4. 상표

일반적으로 상표라 하면 특정이름 또는 상호표시의 사용을 보장하는 수단을 뜻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역사적으로 상표가 처음으로 사용 되어진 로마시대에는 주로 와인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였으며, 영국에서는 주로 양모에 대한 것으로서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시장에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상표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상표를 등록하기를 원할 것이다.

참고로 상표는 적어도 다음 사항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즉,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고안된 구절 및 특징적 표시 (예) 로고 등이다.

유의할 것은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은 7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상표뿐만 아니라 상호명은 아주 귀중한 자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연상 작용을 십분 개발한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때로는 경쟁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상호 명을 모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이에 대한 법의 입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제 4 장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1. 부동산구입

○ 비용 조달문제 (Finance)

일단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나타나면 구입가격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주인과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대리인 (Real Estate Agent)들이 중간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가끔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에게는 실망감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구입가능성을 믿고 진행한 수속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일단 구매자가 결정되었으면 빨리 일을 진행함으로써 집주인이 값이 결정된 후에 값을 다시 올리는 행위(Gazumping)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동산 구입시 모든 금액을 현찰로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거의 대부분은 결국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련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그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에서는 관련 부동산 선정시까지의 비용조달 문제에 대하여 최종승인(Final Approval)을 내릴 수 없으나, 가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들의 변제능력(Capacity for Re-payment)을 고려하여 어느 선까지는 사전승인(Preliminary Approval)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계약 (Contracts)

1988년부터는 법(Conveyancing Act)에 따라 판매계약서 없이 사전에 판매를 위해서 선전을 하는 경우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Contract for Sale)에는 각종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증서(Title documents), 배수 도표(Drainage Diagram) 및 카운슬이 발행한 구역입증 증서(Zoning Certificate)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계약서 사본을 부동산 대리인들에게 요청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판매 (Sale)

구매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부동산 대리인들은 관련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에게 제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판매계약서 사본이며, 다른 한 가지는 "Sale Note"이다.

일단 상기 두 가지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서약을 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대리인들은 약정된 금액을 선수금(Deposit)으로 요청하게 된다.

○ 계약서 교환 (Exchange of Contracts)

상기 계약서 사본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 대리인들은 본 서류를 판매자인 집주인에게 보내게 되며 구입자 본인에게는 집주인이 서명한 원계약서를 보내게 된다.

이를 가리켜 계약서 교환(Exchange of Contracts)이라 부르는데, 이 경우 양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구입 진행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한다.

○ Cooling-Off 권리

새 법에 따라서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기간의 개시는 계약서 교환일로부터 이뤄지며, 그로부터 5일 후(5th Business Day)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이 기간 중 주택 구입의사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다른 Penalty 없이 구매가의 0.25%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며 잔금은 돌려준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모든 경우에 Cooling-off 권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로서 공개경매(Public Auction)의 경우 또는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독립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변호사 서명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동 권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 건물조사(Building Inspection) 또는 해충 보고서(Pest Report) 과정 또한 신속하게 정리하여 동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Settlement

일단 계약서가 교환된 후 Cooling-off Period 가 만료되면, 변호사들은 관련 조사 및 문의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때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금융조달을 마무리 짓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양 당사자(판매자/구매자)의 변호사들은 Settlement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나머지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최종 법적 소유자가 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통상 부동산 구입 시작에서 서류상 최종 정리되는 시간까지 대체로 6주 내지 8주(약 2달)가 걸리나 상황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그 기간을 다소 조종할 수 있는데, 최종 정리되어 해당 부동산의 새 소유주가 되는 마지막 절차를 Settlement라고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 등을 체크하여야 하는데 즉,

- 은행용자 상환금액 및 원 소유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점검
- 부동산 대리인의 Trust에 보관되어 있는 예치금 수령여부
- 세금 및 기타 공과금 조정 정리문제
- 권리증서 이전문제
- Stamp Duty 지불문제
- 부동산 key 수령문제

2. 아파트(Unit)를 구매할 경우

○ Strata Title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 또는 아파트(Unit)등에 가장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Title로써, 스트라타 계획(Strata Plan)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경우 Strata Plan은 각 소유주로 하여금 Strata Title 및 공동재산(Common Property)을 향유케 한다.

○ Company Title

상기에 언급한 Strata Title 이외에 Company Title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Shares)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해당 회사 주식을 팔거나 또는 Unit을 임대(Lease)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소유주들은 해당 Unit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Company Title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Body Corporate

스트라타 계획(Strata Plan)에 있어서의 모든 Unit 소유권자들을 망라하는 일종의 자치기관으로서 Unit에 관한 사항들, 예를 들면 Unit 주변 진입로, 계단 등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 권한행사 및 의무를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연례회의(Annual General Meeting)에서는 소위원회회를 열어 운영방안을 세워 관리하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는 Strata Titles Act 및 내규(By-Laws)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Unit 소유권자의 의무

일반적으로 Unit 소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진다.

- 각종 공과금(Rates, Taxes, Levies)지불
- Body Corporate에 대한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한 통보
- 내규(By-Laws)준수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Body Corporate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동의 없이 Unit 개조, 변경 등의 행위 금지.

○ Unit을 세 놓을 경우

만일 Unit 소유자가 타인에게 세(Rent)를 놓을 경우에는 내규(By-Laws) 및 임차계약서(Tenancy Agreement)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사항을 세입자로 하여금 숙지케 하여야 하며, 또한 Body Corporate에 세입자의 이름, 임대일자 및 부동산 대리인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다른 소유권자 또는 Body Corporate와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Strata Titles Commission 와 또는 Strata Titles Board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매입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매(Auction)이며, 다른 하나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동산 대리인(Real Estate Agent)을 통한 매입이다.

○ 경매를 통한 매입

경매를 통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즉,

- 경매일에 가격이 흥정될 수 있는 최저가격은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선으로서 이 가격은 비밀에 부쳐지며 경매인에게만 통보된다.

- 경매일에 입찰이 최저가격인 Reserve Price에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라도 집주인은 다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리인은 경매일에 최고입찰가격이 최저가격인 Reserve Price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매 후 바로 최고입찰가격을 부른 구매 예정자와 값을 흥정 할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입찰가격은 부동산 바로 그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다른 입찰자를 의식한 군중심리에 의한 입찰가격은 지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성사되면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구입예정 부동산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하는데 즉,

- 일단 부동산 대리인에게 가격대를 문의함으로써 본인의 용자상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다음 사항은 변호사에게 사전에 점검토록 한다.
 - 판매계약서의 조건
 - 권리증서
 - 하수도면
 - 기타 지출비용(Water, Council Rates 등)
 - 부동산용도
 - 용자관계, 담보상황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예 : 도로건설계획)
 - 개량, 개조 등에 대한 카운슬 허락 등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만일 경매가 성사되었을 경우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예치금액은 통상 구매가의 10 %이며 개인수표로 지불한다.

중요한 것은 경매에서는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경매가 아닌 개인 부동산 매입시 주의사항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사전에 의뢰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을 몇 번에 걸쳐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모든 사항이 만족스러울 경우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데 즉, 조건부 가격제시와 무조건부 가격제시를 들 수 있다.

덧붙이면 무조건부 가격 제시는 문자 그대로 가격표대로 아무 조건 없이 구입하는 방식이고 조건부 가격 제시는 예를 들어 벽에 금간 것을 고치는 조건으로 가격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뜻하는데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정의 예치금을 예상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양 당사자가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경우 Offer Document에 서명 - 계약 발효 - 공식 판매계약서 준비(집주인 변호사)의 절차를 거친다.

4. 부동산 매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을 염두에 둔다면 조심스럽게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을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비슷한 매물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체크 한 후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즉, 부동산 위치, 크기, 연도, 상태 등을 아울러 조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다음 사항 등을 부수적으로 사전에 체크하여야 하는데 즉,

- 햇빛 및 환기상태
- 약취제거
- 애완동물
- 카펫 얼룩, 기타 벽 상태, 조명 등 교체
- 쓰레기 처리, 잔디깎기 등등이다.

○ 법적 서류 (Legal Documentation)

부동산 매매시 제일 먼저 접하는 서류가 판매위임장(The Authority to Sell) 또는 Listing Contract로서 부동산 대리인으로부터 서명을 요청받게 된다.

위임장에는 다음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 판매방법
- 대리형태(Exclusive, Non-Exclusive, Sole/Joint, Multiple Listing/Auction등)
- 가격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판매조건
- 광고비 등이다.

○ 판매형태 위임

일반적으로 판매형태에는 경매 또는 개별판매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위임형태가 바뀐다.

- 개별판매 위임(Private Sale Authority)

일반적으로 위임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0~60일간 유효한데 이때 부동산 판매자는 상기에 나와 있는 형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Auction 제외)

- 경매 위임(Auction Authority)

이 경우에는 부동산 판매자가 동 위임장에 서명을 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 대리인에게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경매일 후 30일까지이다.

유의할 점은 부동산 내부의 부착물(Fixtures, Fittings, Chattels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만 후일에 발생할 수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경매시 장점

- 특정일을 경매일로 본인에게 편리하게 정할 수 있다.
- 예치금(통상 10%) 및 Settlement Date를 정할 수 있다.
- 판매 예정가(Reserve Price)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 판매, 광고 등 눈에 띄는 전략을 실행 할 수 있다.

- 구매자들은 조건 없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 높은 입찰가격은 본인이 정한 판매 예정가를 상회할 수 있다.
 - 만일 경매일에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일 후 개별판매로 전환할 수 있다.
 - 만일 경매일 전이라도 높은 가격의 Offer가 있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며 예정된 경매는 취소할 수 있다.
 - 경매에는 Cooling-off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시 단점
- 만일 경매일에도 낙찰이 되지 않아 판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개별판매로 전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상기의 경우 구매자들이 보다 나은 위치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개별판매시 장점
-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반응을 바로 감지할 수 있다.
 - 간혹 어떤 구매자들은 경매를 꺼려하여 대신 본인이 내놓는 판매 예정가를 알기를 선호한다.
 - 만일 2~3명의 서로 다른 Offer가 있을 경우 부동산 대리인은 서로 경쟁을 붙여 높은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 개별판매시 단점
- 구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 획득을 전제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제때에 은행으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구매자들은 협상 후라도 협상 자체를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 개별판매의 경우 판매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판매시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부동산 대리인은 구매자들의 동향 및 반응을 항상 판매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주거용 부동산 신축

주거용 부동산 신축시 우선 건축자문 기관인 Architects Advisory Service에서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혹시 대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하길 원할 경우 해당지역 카운슬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사전에 점검해야한다. 즉,

- 홍수 또는 강의 범람 여부
- 담장 설치문제
- 구획 구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로 또는 하수구 봉쇄문제
- 비용문제
- 개스 또는 전기 공급 여부
- 땅의 형태 또는 형질 분석문제

○ 부속건물 연장

일단 부속건물에 대한 연장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하기 전에 현재의

집 구조가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기 Architects Advisory Service 또는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 등에 반드시 문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설계단계에 접어들면 전문적인 설계사가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RAlA Archicentres 에 문의하면 된다.

○ 건축업자 선정

건축업자가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게 일을 하였을 경우 본인의 권리 또는 방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이다.

건축업자 선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인가 여부

둘째, 등록번호 확인

셋째, 건축업자의 재정상태 점검 등이다.

만일 건축업자가 건축도중 심각한 재정상태에 빠진다면 이야말로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견적시에는 최소한 세군데 이상의 건축업자로부터 견적을 뽑아 비교를 한후 다음사항을 점검해야 하는데 즉,

- 자세한 서면 견적(Quotation)제공여부
- 법정 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여부
- 해당 협회 소속 회원 여부
- 등록비 포함 여부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본인이 수락할 만한 계약서 준비여부
- 기타 참고가 될만한 건축경험, 작업장 소재지 제공여부 등이다.

따라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업자의 평판, 경험, 성실성 등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법적서류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약서상의 조건을 살펴야 하는데, 특히 건축법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다음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바 즉,

- 작업개시 및 완료일
- 건축비
- 부대비용
- 작업중 지불할 비용의 비율 및 타이밍 문제
- 보험혜택 여부
- 작업장 진입/접근여부
- 부속건물의 건축자재 소유권 문제 등이다.

계약서 내용을 다소 수정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과 동시에 Housing Guarantee가 수정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정 기금(Statutory Fund)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구매시처럼 'Cooling Off Period'가 되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민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민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계약(Contract)

1. 계약(Contract)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Legally binding agreement)'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겪는 물건을 사는 경우, 건축업자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는 경우, 돈을 빌리는 경우,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 또는 기계 등을 제조업체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경우 등등 모든 일들이 결국은 계약이라는 문서위에서 움직인다.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법(General Law) 및 기타 성문법(Legislation or Statutory Law)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Trade Practices Act, The Fair Trading Act, The Credit Act 및 The Contracts Review Act 등을 들 수 있다.

2. 계약체결권자

NSW주에서는 만 18세에 도달되어야 법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과연 그 계약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과 당사자가 그 계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참고로 정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계약의 요소(Element of Contract)

일반적으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합의(Agreement)

이 경우 가장 기본적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개념이 도입된다.

- 약인(Consideration)

대가지불이라는 평범한 우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당사자 간에 행한 용역 또는 물품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법적의도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뜻한다. 물론 이 경우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연령 및 정신능력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4. 계약조건(Terms of Contract)

대체로 계약조건은 당사자가 정하나 법 스스로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NSW주의 Contracts Review Act에 의하면 계약조건이 극히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불공정한 계약(Unjust Contract)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Contracts Review Act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중 일방에 의해 상대방이 속임을 당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법적 무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결국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불공정여부, 계약조건 이행의 어려움 및 기타 독자적인 법적자문(Legal Advice)를 구하기 어려운지 등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각도에서 심리를 한다.

6. 계약양식

일반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집 매매 또는 용자계약 등등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처럼 반드시 서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의무를 보다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상세한 합의에 대한 법적조항을 명기함으로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유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권리 의무에 대해 상세히 인지 할 수 있다.

특히 돈이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7. 계약의 구속성

만일 서면 계약(Written Contract)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비록 그 계약조건을 읽지 않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서명을 한 이상 그 계약 조건에 구속된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계약이 반드시 서명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Parking Ticket 이나 Drycleaning Docket 등은 별도의 서명이 없다하더라도 뒷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어 그 계약조건에 구속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계약 조건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은 어떤 계약조건인가 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파기(위반)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 만일 그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더 이상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

만일 계약위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치유책이 예상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 상대방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 원래의 계약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정 명령(Court Order)
- 양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파기를 금하는 법정명령
- 계약 자체에 대한 이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계약 파기 당사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는 법정명령

물론 그 치유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의 종류 및 그 계약파기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 변호사의 도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 최선의 처리방안을 모색하며 법적자문(Legal Advice)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및 계약상의 권리(Rights) 의무(Obligations)에 대한 자문
- 계약 서명이전에 그 계약의 결과에 대한 자문
- 계약조건에 대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 및 불리한 조건의 변경 삭제
-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설명 및 안내
-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자문 및 협력
- 본인이 계약위반으로 고소당하였을 경우의 자문 및 협력

금전채무(Debt)

일반적으로 금전채무(Debt)라 하면 채무자의 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법원의 기록에 의하여 존재를 입증 시키는 것이 기록금전채무(Debt of Record)로서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확정판결금전채무(Judgement Debt)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Debt는 아니지만 소송에서 이겨 확정액이 되면 Debt 가 되며 파산시에 입증되는데 이때 이를 입증채무(Provable Debt)라 한다.

그렇다면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1. 법정절차

하급법원인 Local Court에서의 절차는 소환장이 아닌 원고의 최초의 클레임으로부터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적정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원고의 일반 클레임(Ordinary Statement of Claim) 서식으로 청구되며, 특정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확정액 클레임(Statement of Liquidated Claim) 서식이 사용된다.

이때, 채권자가 후자의 서식을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최초의 소답은 28일내에 이뤄져야 하며, 만일 28일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이 내려질 수 있다.

원고인 채권자가 소장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인 채무자는 그 내용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그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되는데, 만일 원고의 소장 내용을 인정하였을 시에는 인정서(Statement of Confession)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분할상환허가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분할상환 명령절차

○ 채무자의 분할상환명령 신청

채무자는 신청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도 채무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등록

등록서기는 채무자의 신청을 허용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만일 등록서기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분할상환명령을 내렸다면 채권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심리(Hearing)

만일 등록서기가 채무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등록서기의 허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리(Hearing)에 들어가게 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분할상환명령 및 그 금액의 정도를 결정하며 또한 신청비용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일 재판관할권을 가진 지역에서 심리 및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원금, 이자 및 채권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까지 부담하게 된다.

○ 이자지급

이자지급에 대한 방법은 원고인 채권자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모색된다.

첫째, 만일 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인 채권자는 동 계약상의 이자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둘째,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아무런 계약 또는 약정이 없다면 이자율은 금전채무(Debt)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계산된다.

○ 기타

이밖에도 결석판결이 본인도 모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체로 결석판결은 원고의 클레임 송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 만일 이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유보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채무자의 방어 이유서가 14일 이내에 제출되었음을 조건으로 결석판결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신청서가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의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두 번째 명령이 채권자의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 금전채무의 회복

대부분의 금전채무의 회복에 대한 절차는 고도로 전문적인 성격을 띠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되, 관심 있는 분들은 Local Court(Civil Claims) Rules 을 참조하기 바란다.

○ 기타

일반적으로 분할상환명령을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채권자의 금전채무에 대한 집행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나, 채권압류명령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때, 매번의 분할상환명령신청은 각각 집행유보신청서를 첨부해야만 채권자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유보될 뿐이다.

참고로 채권압류명령의 일환으로서 일정액 이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채권압류(Garnishment)

원래 영미법상에서의 의미는, 사건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통고, 즉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혹은 소송에 참가할 뜻을 통고하는 것을 뜻하였으나, 현재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자로서가 아니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압류의 통고를 통상 가리킨다.

1. 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명령이라 하면, 흔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관계가 있는 제 3 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금(Wages)을 압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예치해 놓은 돈 역시 압류대상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채권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무한정으로 채무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NSW주에서는 시드니의 기본임금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기본임금 역시 물가지수 및 기타 경제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는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채권압류명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일단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바, 예를 들면

-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질 당시 법원의 등록서기는 채무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 채무자가 회사의 피고용인일 경우 고용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 채무자는 본인의 재정상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악할 수 있으며,
- 채권압류명령이 개인이나 회사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임금의 압류시에 취해야 할 사항

만일 채무자가 채무액 및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채권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집행유보 및 판결취소를 구하는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해 직장을 옮긴다면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 방법은 아주 위험하므로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다른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직장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다른 직장을 잡아서 근무한다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고용주에게 그 효과가 미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사를 위한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한다.

4. 채권압류에 대한 분할상환 명령의 효과

분할상환명령은 채권압류명령을 소위 분할 채권압류명령으로 바뀌게 한다.

이는 채무가 변제될 때 까지 채권 압류명령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물론 채무자는 분할상환명령을 신청하는 대신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벌여서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도 있다.

5. 채권압류에 따른 권고사직

보통 고용주들은 일단 채권압류명령이 채무자인 고용인에게 내려지게 되면, 이에 대한 불편 및 기타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피고용인을 권고 사직케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때, 채무자인 피고용인의 임금이 채권 압류명령으로 압류당하는 것이 주 이유인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사직케 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 형사소추 당하지도 않는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원상복귀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 될 수는 없다.

6. 공무원 임금에 대한 압류

사기업이 아닌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권압류절차가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공제내역은 NSW주의 공무원과 연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상이한 절차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공무원 법(Public Service Act)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제집행

1. 집달리의 임무

일반적으로 집달리는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상의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것이며, 이의 변제를 위하여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이때, 강제집행영장 내용에 대한 통고서(Notice)를 채무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재량 즉,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거나 이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집달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시점이 재산 압류 후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비용, 이에 따른 광고비 및 기타 처분 경비 등 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렇다면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무단으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이다.

이 때에도 그 강제집행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처분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강제집행 전에 원만한 타결을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재산이 압류되는가?

집달리는 돈, 가구, TV, 라디오, 전기제품 또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는데 하급법원인 Local Court의 판결만으로는 채무자의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압류할 수가 없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중급법원인 District Court에서 발부한 강제집행영장으로 이의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임대한 TV라든가,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친척 소유의 물건 등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채무자가 금전채무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이 압류대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집달리에게 알릴 수 있다.

3. 압류방법

집달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즉, 압류대상 물건을 채무자의 집에서 처분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관행이다.

집달리는 압류통보서를 압류대상 물건에 붙이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 한국의 강제집행절차의 일면을 보는 듯 하다.

4. 강제집행영장 발부시에 취해야 할 사항

만일 집달리 또는 채권자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집행유보 및 판결취소 명령을 구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너무 늦게 진행되므로 빠른 해결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분할상환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 상환명령은 강제집행영장의 유보로서 작용될 수 있다.

이웃과의 분쟁 발생시의 법적문제

1. 이웃과 분쟁 발생시의 대처방안

일반적으로 이웃과의 분쟁시, 당사자가 대화로써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문제는, 일단 이웃과의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그 결과 적대관계만이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 이전에 어떠한 법적 대응도 자제하였으면 한다.

그렇다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해결하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

이 경우에는 정부기관인 Community Justice Centre(지역사회센터)를 접촉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조화 있게 처리하여 준다.(Community Justice Centre 목록은 White Page 전화번호부중 'NSW Government'란을 찾으면 쉽게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상기 기관의 중재자들의 역할이다. 즉, 중재자들은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비용 산정을 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다.

단지 동 기관에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를 접촉하여 본인들의 법적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권유하고 있다.

2. 담장(Fence) 설치문제

만일 이웃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장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 문제는 본인은 담장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담장을 쌓기 전에 견적(Quotation)을 뽑아 이웃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때에는 이웃에게 향후 설치될 담장 작업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통지한다.

만일 이 경우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Local Court나 Land Board에 본 담장설치에 대한 명령을 구할 수 있다.

만일 담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비용부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분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담장 수리문제

담장을 수리할 경우 역시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비용분담을 하고 있으나 만일 담장이 상대방의 과실로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책임 당사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먼저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나뭇가지가 이웃담장을 넘어갔을 경우

만일 이웃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왔거나 또는 반대로 이쪽 나뭇가지가 이웃 담장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웃에게 본인 구역을 넘어온 나뭇가지 또는 뿌리를 자르겠다는 통보를 한 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경우 먼저 지역 카운슬(Local Council)에 접촉하여 Tree Preservation Order에 어느 크기까지 자를 수 없는지를 규정하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고 있는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른 나뭇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자른 나뭇가지 또는 뿌리 등을 원 소유자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이웃 나뭇가지 등이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경우 즉, 상대방 나뭇가지 또는 뿌리가 자동차 진입로를 훼손시켰거나 죽은 나뭇가지가 떨어져 지붕 기와가 떨어져 나갔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이웃이 내 구역을 드나드는 경우

예를 들어 이웃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데 참고로, 문서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권이 임의로 종료되거나 변화될 수 없으나 만일 이웃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Land Title Documents참조)

또한 특정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느 때라도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따라서 승낙을 취소할 경우 상대방은 반드시 바로 떠나야만 하며 만일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단침입자로 간주되어 자칫하면 경찰에 기소될 수도 있다.

특히 나뭇가지, 공 또는 동물 등이 이웃의 구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의 승낙을 얻은 후 처리를 하여야지 임의로 처리할 경우에는 상기경우처럼 무단침입으로 간주되며 더 나아가서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6. 이웃동물이 내 구역을 침범한 경우

만일 본인 승낙이 없이 또는 처음에는 승낙을 하였으나 나중에 승낙을 철회한 경우, 이웃 애완동물이 본인 정원에 들어왔을 때에는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어 지역 카운슬에 신고하여 퇴거시킨다.

만일 이 경우 아무런 손해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웃에게 되돌려 주거나 또는 이웃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반대로 동물이 손해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이웃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전케 할 수 있다.

이밖에 기타 동물들, 즉 소, 말, 양, 염소 등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도 상기 사례 공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

7. 이웃의 소음공해

우선 최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소음을 중지 또는 감소시키거나 특정시간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일 이 방법이 설득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음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즉, 이웃이 밤늦도록 소음을 발생케 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특정기구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즉 잔디 깎기, 기계, 공구, 에어컨디셔너 등을 특정시간 이외에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케 할 경우에는 지역 카운슬 또는 '주 공해 통제위원회'(State Pollution Control Commission)에 접촉하여 해결할 수 있다.

8. 이웃의 소각(Burning Off) 행위

바람의 향방에 따라서 본인이 이웃의 소각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이웃으로 하여금 소각행위를 금지케 하거나 다른 시간에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 카운슬 마다 소각행위를 규제 또는 전면 금지하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9. 이웃의 엿보는 행위(Peering)

이웃이 본인 건물을 엿본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는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결국 이웃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함과 동시에 별도로 담장을 높게 올려 쌓는다든지, 나무를 심어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여 방음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다.

10. 변호사가 도와주는 일

상기 문제점들을 변호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경우 변호사가 도와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이웃과의 분쟁시 본인의 권리에 대한 조언
- 특정 분쟁사안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조치에 대한 자문
- 정부기관(카운슬 등)에 대한 편지 송부

제 6 장

**형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형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1. 체포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데 즉,

-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Warrant)을 소지한 경우
- 당사자가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려하거나, 실행 중에 있거나, 또는 실행 완료된 경우로서 경찰관이 합당한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타 연방형법(the Commonwealth Crimes Act)에 위배되는 경우
- 금지품목을 수입, 수출하거나, 밀수에 관련된 것으로 혐의를 받을 경우

이 때 경찰관이 아닌 일반시민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극히 주의를 요한다. 즉, 이웃사람이 성가시게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욕을 했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체포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체포방법

경찰관이 당사자를 체포할 경우 다음사항 등을 고지한다. 즉,

- 체포상황(Under Arrest)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체포이유(Reason Why)
- 연행(이 경우는 동행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3. 강제연행

경찰관은 당사자를 체포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행위를 취할 수 있으나 합당하지 않은 물리적 힘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체포 후 당사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 판단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채울 수 있다.

물론 판사는 그 상황에서 행사된 물리적 힘이 타당했는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 반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거부 자체는 위법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는 별도 항목의 기소가 가능하나, 예를 들어 단순히 바닥에 들어 눕는 행위나 비협조적인 행위 자체는 체포거부로 볼 수 없다.

5. 몸 수색권한

경찰관은 일단 체포 후에는 영장 없이도 몸수색을 할 권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6. 심문

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동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나 제 3의 증인을 참석케 하여 심문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다.

7. 체포 후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변호사 면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NSW 경찰지침서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소 후에도 친구, 가족, 변호사 또는 담당의사 등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묵비권

일반적으로 체포 후 심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체포일 경우는 이름, 주소, 사고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소상히 알려야 한다.

경찰관은 심문 전에 묵비권 행사에 대해 고지하여야 하며 일단 응답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서가 꾸며진 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사실일 경우에만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9. 지문채취

경찰관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일단 무죄로 석방되거나 고소가 취하될 경우에는 지문 채취된 내용 등을 말소 요청할 수 있다.

10. 구금기간

일반적으로 구속이 된 후 심문이 끝나면 보석허가로 풀려날 수 있으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석신청이 거절되면 법원으로 송치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문제

1. 피해자 권리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범법자(Offender)에 대한 소송제기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만일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을 경우 법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2. 피해자 조정역할

NSW경찰 내에는 형사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돕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본 기구는 법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는 언제 범법자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가 및 보석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와주고 있다.

3. 형사사건 종류

여러 형태의 형사사건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 또는 집에서의 도난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 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폭행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4. 법정절차

만일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 또는 소송주체로서 법정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범법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범법자는 경찰에 의해 기소된다.

경찰은 범법자의 확인을 본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후에 본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의 증인채택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주요 법정절차이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 사건조사(Investigation)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체포(Arrest)
- 기소(Charges)
- 보석(Bail)-법원 또는 경찰에서 허락할 경우
- 출두(First Appearance)
- 약식재판(범죄사실이 경미할 경우) 혹은 심리전 절차단계(범죄사실이 중할 경우)
- 법정심리(심리전 절차단계 다음단계)

상기 재판 절차 중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였을 경우 해당 법원 등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에 참석하여야만 하는 경우 법원지원제도(Court Support Scheme)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보상(Victims Compensation)

만일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 이에는 구체적으로 고통 정도, 수입 손실,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상과 관련한 모든 비용내역서 뿐만 아니라 의료처리내역 또한 잘 보관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피해자 보상위원회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사고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상액 및 기타 비용은 소정 요율표(Prescribed Scale)에 따라 정해진다.

만일 재판이 확정될 경우에는 범법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으

로 청구할 수 없다.

상기 보상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경찰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야말로 호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행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호주법 및 사회규범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도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결혼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 관계에 있거나를 불문한다.

따라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과거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을 한없이 방치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법이 개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비록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폭행의 위협 및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참고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열거하면,

- Police Victims of Crime Co-ordinator/경찰
- Domestic Violence Advocacy Centre/보호기관
- Chamber Magistrate(Local Court)/법원
- Solicitor/변호사
- Dept. of Social Security/사회보장성 등등

성폭행(Sexual Assault)

만일 본인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법적수속(Legal Process)을 밟을 것이며, 상기에 열거한 Victims of Crime Co-ordinator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한다.

만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병원에 있는 Sexual Assault Centre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인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을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바로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유아 성폭행(Child Sexual Assault)

만일 유아(Child)가 성폭행 피해자일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기타 Sexual Assault Centre 또는 의료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바로 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가능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를 밟는다.

또한 Police Victims of Crime Co-ordinator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접촉해야 한다.

일반 폭행

만일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 본인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 본인이 폭행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형사보상제도(Victims Compensation Scheme)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만일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은 폭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법적 소송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Victims Compensation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Motor Vehicle Accidents)

만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거나 또는 타인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만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메모하여야 한다.

- 사고차량 운전자의 이름, 주소 및 자동차면허증번호
- 사고차량 소유자의 이름, 주소

이 경우 양 당사자들은 법에 의하여 해당사항을 자세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사고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내용 및 기타 증인(witness)들의 이름 및 주소 등을 포함한다면 향후 보다 확실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28일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간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한
상해클레임(Claim for Personal Injury)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도 있다.

특히 본인이 다쳐 상기내용을 메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타인
으로 하여금 반드시 메모케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전문변호사를 접촉하여 보상 문제를 협의하
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로 하여금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회
사를 접촉케 하여 클레임 양식을 접수케 하여야 한다.

재산에 대한 범죄

재산권 자체는 법적으로 특별권리를 향유케 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면 바로 변호사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1. 도둑맞은 재산

만일 본인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찰에 신고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은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각 품목별로 확인
을 할 수 있는 표기 또는 일련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또한 재산에 대하여 보험을 들은 경우 보험회사에
바로 통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도둑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산피해

만일 재산이 불량배들에 의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보험회사(보험 가입시)에 연락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1)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판피해를 준 불량배들을 체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산피해가 차량으로 인한 경우

만일 차량이 집에 뛰어들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상태에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반드시 경찰에 바로 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접촉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4. 협박

만일 본인 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준다고 협박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명령을 구하여 본인 또는 본인 재산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변호사 또는 법원의 Chamber Magistrate를 접촉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5. 범법자에 의한 재산피해

만일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된 범법자에 의하여 본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범법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어떻게 상기 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6.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

일반적으로 변호사(Solicitor)와 협의하는 것이 일상 형태이나 그밖에 경찰, 법원,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mmission) 및 기타 지역 법률센터(Community Legal Centre) 등에 문의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의료 진료시의 법적권리

1. Medical Consumers Association (NSW)

상기 협회는 1976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즉,

-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서비스에 있어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측면
- 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제공 및 교육
- 의사 및 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처리 보조 역할

2. 환자의 권리 및 의무

- 본인 건강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권리
- 향후 진료절차 및 가능한 대체수단에 대한 설명 요구권리
- 본 치료 이외에도 한방 처방 등 도움이 되는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떠한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없는 경우 특별치료, 투약, 기타 검사 등 의료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비록 과거에 동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마음을 바꾸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경우 마음을 바꾸기 이전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 본인 신체를 사용하는 어떠한 검사 또는 실험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환자 본인의 병력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의료비에 대한 상세명세 요구권리
- 신체상태 또는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진료기관을 퇴원할 수 있는 권리(이 경우 퇴원서명을 해야 하나 서명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단, 전염성 질병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등에 대한 배상 청구권리
- 퇴원 후 어떻게 본인 건강을 돌보는가에 대한 적절한 지시 요구 권리
-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시행하는 실험, 진료 및 관찰 등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외부인의 참관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외로서는 형사사건일 경우 경찰이 조사차 참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건강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도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사회적 신분,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가장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별진료에 적합한 기관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의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건강기록 등을 참조할 수 있는 권리
- 방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료기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유한 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 권리
- 진료 결정시 친구, 변호사 등을 참관시킬 수 있는 권리
- 진료 결정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체할 수 있는 권리
- 존엄성을 가지고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권리

3. 진료 필요시 점검사항

상기에 나타나 있는 제반권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후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본 후 모든 테스트, 진료 또는 기타 절차의 목적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가를 점검하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동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본다.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기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고 본인이 숙지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본인 및 가족의 병력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4. 불만 처리기관

만일 본인이 의료 진료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자격등록위원회(Registration Board), 의료조사위원회(Medical Investigation Committee) 또는 보건성 클레임부서(Complaints Unit of

Minister for Health)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에 설명한 Medical Consumers Association에 접촉하여 해결할 수 있다.

부 록

사례 모음 (CASES)

사례 모음 (CASES)

CASE 1 불공정행위

세탁소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독점하고 있는 National Automatic Laundry & Cleaning Council(NALCC)은 NSW 주 및 ACT 주에 약 100 여개에 달하는 자동세탁소 경영주 및 동전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점을 그 산하 회원으로 하고 있었다.

대리점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약 60%에 달하는 엄청난 조직을 과시하고 있었다.

NALCC의 규정을 보면 기존 회원 세탁소에서 0.75km 반경 범위 내에서는 다른 대리점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거래 실무위원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본 NALCC의 규정은 오로지 산하 회원 업소들의 이익을 위해 해당 시장을 놓고 서로 그 시장을 나누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본 규정은 일반 상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

CASE 2 은행약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ankcard가 여러 은행에 의해 처음 개설되었을 때의 일이다.

Bankcard를 개설하려고 하는 수많은 은행들은 본 Bankcard의 수수료 및 이자율에 대해 조문화하기 전에 '거래 실무위원회'에 그 유효성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참고로 여러 은행들은 Bankcard 및 기타 신용카드 등에 대해 별도의 독립회사를 둬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거래 실무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각 은행이 Bankcard를 취급하는 독립법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비록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그 수많은 Bankcard와 관련한 은행 약관에 대해 우리가 보증을 못할 이유는 없다."

CASE 3 불공정 행위

신발 제조업체인 Bata Shoe Company는 한 신발 소매업체에 신발 공급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그 소매업자가 경영하는 점포에는 Bata Shoe Company 회사의 정책에 걸 맞는 적절한 시설 및 직원이 없으며 또한 고객에 대한 A/S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로서는 그 소매업자가 Bata Shoe Company가 규정한 최소 판매가격 이하로 신발을 판매하였다는 사 실을 들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Bata Shoe Company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매가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이는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Bata Shoe Company에 \$5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바이다."

CASE 4 유사상표

STEPHENS는 세계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잉크 제조업체의 상표명이며 특히 이 회사의 'Blue Black' 색깔은 공히 세계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새로운 잉크 제조업체는 'STEELPEN'S BLUE BLACK'이라는 상표명으로 시장에 선보였다.

STEPHENS 회사는 이의 판매중지를 요청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명의 유사성이 너무 근사함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잉크는 아주 기본적인 문구용품이므로 일반인들은 그것을 면밀히 보지 않고 구매함으로서 실수할 소지가 다분하다."

CASE 5 잡지내용의 유사성

거의 50년이나 된 월간 크리켓잡지인 The Cricketer는 영국의 크리켓에 대해서 줄곧 다뤘었다.

1973년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한 잡지회사는 'Cricketer'라는 스포츠 잡지를 발간하면서, 그 내용은 주로 호주의 크리켓에 대해서 다뤘다.

이에 대해 영국 잡지 회사는 그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잡지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고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또한 그 내용 역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영국 잡지는 영국의 크리켓에 대해서 다뤘고, 호주 잡지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의 크리켓에 대해서 주로 다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두 잡지를 혼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이다.”

CASE 6 주의의무 태만

한 어린아이가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져 결국 타서 죽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전봇대는 공사가 어느 개인 소유의 대지에 세운 것이었다. 물론 그 전봇대 주위에는 방어벽이 둘러 쌓여있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 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를 포함한 이웃 어린아이들이 그 사고 당시에 그 땅위에서 놀았으나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그 전봇대의 소유자인 전기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기공사는 그 사고를 당한 어린애는 무단(불법)침입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견해는 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전기공사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땅 위에 설치된 매우 위험한 전송 시스템에 관해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나태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CASE 7 가게주인의 부주의와 손해배상

Mr.K 는 우유 한통을 사기위하여 차를 길가에 주차시켜 놓고 가게로 들어가려고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다가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 때는 밖이 매우 어두웠고 가게는 형광 싸인이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안을 들여다보니 가게주인과 또 한사람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냉장고를 고치려고 점검 중이었다.

가게 문은 전면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최근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

가게 문에는 30cm × 7.5cm 크기의 조그마한 경고 싸인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Closed" 싸인은 바로 손잡이 위로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Mr.K 는 가게가 문을 열린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실 그 경고 싸인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게 문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때 그 유리문은 박살이 났고 따라서 Mr.K 역시 상당한 상처를 전신에 입었다.

Mr.K 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그 주요 이유로서, 첫 번째로 Mr.K 가 가게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가게가 법률적으로 말해서 청약의 유인을 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닫힌 유리문이 예기치 않은 위험을 내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가게 주인이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으며, 세 번째 이유로서는, 상기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로서는,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따라서 보통사람이라면 법률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따라 당연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었을 상황을 인정하였다.

물론 문이 잠겨있다는 표시를 하였지만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험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다시 말하면 'Closed' 싸인이 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만 했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게주인은 가게 문이 박살이 났을 때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게 문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게주인은 이를 알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고객은 어느 정도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실제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CASE 8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한 경우

Mr. K는 호주인이 경영하는 조그만 무역회사의 이사 자리에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랐다.

Mr. K는 사업상 또는 친교상 직책에 맞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맺고, 회사 명의로 벤츠 1대를 최신형으로 구입하였다.

문제는 Mr.K 가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차를 판매한 회사가 Mr. K가 근무하는 무역회사에 차 대금을 지불하라는 독촉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회사 측은 Mr. K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차를 판매한 회사는 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무역회사 역시 이에 맞섰다.

결국 법원은, “회사 사정상 그 대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서 Mr. K가 독자적으로 이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면 Mr. K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판시했다.

CASE 9 파트너관계

Mr.P는 가죽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의 꿈은 하루 빨리 이 회사의 정식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10,000을 회사운영에 투자하고 싶었고, 파트너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일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파트너들은 Mr.P를 싫어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파트너들에게 그를 해고시키자고 설득했다.

Mr. P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그는 이 회사의 파트너이므로 빨리 회사정리 절차를 거쳐 회사자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파트너들은 주장하기를, 그는 단순한 이 회사의 종업원일 뿐이며 단지 \$10,000을 회사에 빌려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파트너들이 합의한 것은 Mr.P에게 사업상의 이익(또는 손해)을 분배하는 것이지, 파트너의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법적 지위는 자본을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업상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고, 더 나아가서 거래선에게 파트너로 소개를 한 바도 없다는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것이다.

Mr.P의 유일한 권리는 그가 회사에 빌려준 자본에 대한 이익의 분배 일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법원은, “모든 사안을 감안할 때 Mr.P가 파트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CASE 10 비밀정보 유용과 손해배상

A회사는 고무장갑을 만드는데 있어 독특한 공정을 고안해 내었다.

A회사의 간부인 Mr.Kim(가명)은 전직 A회사의 세부내용을 Mr.Park에게 알려주었다.

Mr.Park은 본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기계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A회사에 버금가는 경쟁회사를 2년 후에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A회사는 Mr.Kim 및 Mr.Park 그리고 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본 공정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법원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본건과 관련,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유용한 사실이 확실시 되므로 Mr.Kim, Mr.Park 및 회사 B는 회사 A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새로 모방한 기계를 처분 하여야 함에 이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CASE 11 기업정보와 종업원의 책임

Mr.Kim(가명) 및 Mr.Song(가명)은 회사 A의 고급간부였는데, 회사 A는 보청기를 만드는 특수제작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기술은 상당히 고도의 것이었고, Mr.Kim 및 Mr.Song은 생산 공정의 참여에 줄곧 참여해 왔었다.

문제는 Mr.Kim 및 Mr.Song은 주말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경쟁회사인 B를 위하여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는데 있었다.

Mr.Kim이 개발한 공정은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A회사의 몇몇 종업원들 역시 Mr.Kim을 도와주면서 여가를 선용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A회사는 회사 B와 Mr.Kim등 몇몇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발견하기에 이르렀고, 종업원들이 B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종업원들이 여가선용을 하여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을 제약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명백히 종업원들이 고의적으로 또한 남모르게 본 건과 관련된 행위를 행함으로써 회사 A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록 여가시간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충실의무(Obligation of Fidelity)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회사 B가 회사 A의 종업원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원명령은 이유가 타당하다.”

CASE 12 비합리적 조건

Mr.Jung(가명)은 A 복덕방(Real Estate Agent)에 고용되어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합의, 서명을 하였다.

즉, 향후 3년간 A 복덕방으로부터 1 마일 반경에 있는 어느 복덕방에서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이었다.

계약 후 1년이 지나자 Mr.Jung은 A 복덕방을 떠나게 되었고, A 복덕방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B 복덕방을 차리게 되었다.

복덕방은 Mr.Ju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비록 계약조건에 Mr.Jung이 합의. 서명을 하였지만 3 년간의 계약조건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Mr.Jung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CASE 13 파트너의 정의

Mr.Kim(가명)은 투자할 자본을 약 \$200,000을 보유하고 있었다.

Mr.Kim은 시드니 지역이 요트를 즐기기엔 쾌적한 곳이라고 느껴 요트 판매 및 수리 센터를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상기 자본을 투자 하였다.

다른 두 명의 친구인 Mr.Willam과 Mr.David 역시 요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Mr.Kim의 사업에 동참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두 명의 친구들은 투자자본이 전혀 없었지만 Full Time으로 일하기를 원하였고, 결국 두 명의 친구들은 본 사업의 정식 파트너가 되었다.

Mr.Kim과 파트너들 간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Mr.Kim이 본 사업에 \$200,000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의 분배를 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내용 중에는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의 25%까지는 공동운명을 진다는 것이었다.

Mr.Kim에게는 회계장부를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사업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변환을 주장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들이 소집 되었을 때 Mr.Kim 역시 잔여재산의 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채권자들은 Mr.Kim의 주장을 일축하였는데, 이유인즉 Mr.Kim은 채권자라기보다는 회사의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처음의 서면계약은 Mr.Kim과 두 파트너 간에 맺어졌는데, Mr.Kim은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Mr.Kim과 두 파트너 간에 맺어진 계약내용은 Mr.Kim이 파트너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으나,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파트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Mr.Kim은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Mr.Kim을 본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파트너로 보는 것이 법리에도 맞다.”

CASE 14 비밀유지의무

Mr.P(가명)는 A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10회 이상 차월(Overdraw)을 하게 되어 매주 얼마씩 갚아나가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때 본인의 주소 및 회사의 이름 등 명세를 통보하게 되었다.

문제는 얼마 안 되어 Mr.P가 대금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의 매니저는 Mr.P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Mr.P의 현주소를 알아내려 하였다.

매니저는 Mr.P의 회사중역에게 Mr.P이 현재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차월(Overdraw)한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더 나아가 은행 매니저는 Mr.P의 수표를 추적해 본 결과 Mr.P의 수표는 경마에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침언하였다.

결과적으로 Mr.P가 다니는 회사는 Mr.P의 고용계약 기간을 갱신하는데 있어서 거부 의사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따라서, Mr.P는 A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로서는 은행 측이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Mr.P의 행적이 정상은 아니라하더라도 은행 측은 고객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 측은 Mr.P에게 이와 관련한 배상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즉, 의회입법(Act of Parliament) 또는 법원명령(Court Order)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거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또는 은행 고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시각 역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은행 측으로부터 캐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나, 실제로 중요한 범죄수사를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은행 측이 그러한 자료를 전부 넘겨줄 경우에는 법원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지배론 이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어서 은행이자를 벌어들인 고객들 명단이 세무당국에 제공될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면책된다.)

CASE 15 비밀유지의무

Ms. Park(가명)은 A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옷을 맞추게 되어 드레스 메이커에게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다.

A 은행은 그 녀의 구좌에 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는 잔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서는 이미 수많은 수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용을 계속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Ms. Park은 남편에게 수표의 부도에 관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고 이에 남편은 은행에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Ms. Park은 은행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어느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정도 대화가 진행되자 반대로 매니저가 불평을 하면서 항의가 시작되었고, 그 녀는 그것을 방어하는데 급급하게 되었다.

매니저는 Ms. Park의 남편에게 이미 발행된 수표는 다른 특정인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에 Ms. Park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주된 이유로는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은행의 이해관계로 볼 때,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그렇게 된 동기 역시 Ms. Park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는, Ms. Park의 남편이 그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매니저가 남편한테 Ms. Park이 매니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점 등이 정당하게 보이므로, 은행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무리는 없을 것이다."

CASE 16 고객의 의무

Mr.Kang(가명)은 Computer Accounting Service(CAS)에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다.

수취인란에 회사명의 약자인 CAS를 쓰게 되었는데, 문제는 Mr.Kang이 고용하고 있던 사환이 그 수표에 쓴 CAS 단어 뒤에 'H'를 덧붙여 써넣은 결과 수취인은 CAS회사가 아닌 'CASH(현금)'이 되어버렸다.

그 사환은 이 수표를 은행에서 현찰화 하였다.

Mr.Kang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고객은 은행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기만적인 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므로, 은행 측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CASE 17 부도처리와 명예훼손

Mr.Kim(가명)은 책 출판하는 비즈니스를 소규모로 집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Mr.Kim은 거래선인 Mr.Johnson에게 A 은행 수표를 추심하려고 은행에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부도처리가 되어 되돌아오고 말았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Mr.Kim의 구좌에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수표가 부도처리된 것이 아니라, 은행 직원의 실수로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다.

Mr.Kim은 A 은행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A 은행이 표시한 ‘예금 잔고 부족’이라는 표기 내용이 마치 Mr.Kim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사정에 와있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Mr.Kim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A 은행의 실수로 Mr.Kim의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것은 명백히 Mr.Kim의 명예를 훼손시킨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은행의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따라서, A 은행은 Mr.Kim에게 응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CASE 18 잘못된 평가와 책임범위

A 광고회사는 B 회사에게 광고주문에 대해 하청계약을 맺는 체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A광고회사가 B 회사의 거래은행인 C 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하자, C 은행은 B 회사에 대해 상당한 평가를 내리고, 단서조항으로서 절대적으로 그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표기하였다.

문제는 그 평가서를 믿고, A 광고회사는 \$100,000 상당의 주문을 B 회사에게 하였으나, B 회사는 바로 파산을 하여 A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는데 있었다.

A회사는 B 회사에게 신용평가를 잘못 내려준 C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C 은행이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무책임한 평가로 인하여 A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CASE 19 불량품과 손해배상

Kim은 6살의 꼬마로서 Mr.John의 가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을 샀다.

막상 그 장난감 총을 사용하려고 하자 곧 부서져서 Kim은 아버지를 통하여 Mr.Joh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로서는 그 장난감 총 그 자체는 이미 상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원래의 용도 기준치에도 맞지 않았음을 들었다.

법원은 Kim의 제소이유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Mr.John에게 내렸다.

CASE 20 공급계약과 손해배상

Mr.Hong(가명)은 '연기를 제거하는 난로'를 고안한 Mr.Lee(가명)에게 편지를 띄웠는데, 그 내용은 만일 Mr.Lee가 자기의 특허품을 보내오면 Mr.Hong은 그것을 상업화하여 볼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Mr.Lee는 자기의 특허품을 Mr.Hong의 장소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Mr.Hong이 제시한 대로 상업화가 되지 않자 Mr.Hong은 그것을 Mr.Lee.에게 되돌려 주었다.

Mr.Lee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Lee의 특허품이 Mr.Hong이 의도된 대로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어떠한 보증도 한 적도 없었지만 Mr.Lee는 당사자 간에 그 특허품을 Mr.Hong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한 소정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CASE 21 허위광고와 벌금

어느 날 호주 주요 잡지인 ‘The Australian’, ‘Women’s Weekly’, ‘Reader’s Digest’, ‘New Idea’ 등에 어느 특정 전기제품 회사의 광고가 대대적으로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A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로 오븐은 호주표준규격심사위원회 (Standards Association of Australia)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위원회의 승인번호가 기재된 등록상표까지 첨부하여 게재하였기에 상기에 언급한 문구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설득력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문제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기광고에 대해 정식 제소하기에 이르렀는데, 무려 10여 가지에 달하는 허위광고 문구를 이유로 들었다.

A회사는 상기 소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갔다.

비록 A회사의 오븐이 기존의 표준 규격에 맞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광고 문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주표준규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되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결국 상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 등록상표 사용을 허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A회사에 그러한 증서를 발행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A회사는 각 항목 당 \$10,000씩 총 10개 항목의 벌금인 \$100,000이 부과되었다.

CASE 22 불량차와 손해배상

Mr.Kim(가명)은 아내에게 차를 사주었다.

문제는 그 중고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켜 차고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Mrs.Kim은 임신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차가 없으므로 해서 생기는 불편을 상당히 겪게 되었다.

결국 Mrs.Kim은 병원을 다니는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이 예상 밖으로 들게 되었다.

Mr.Kim과 Mrs.Kim은 중고차를 판 딜러상에게 중고차 수리비뿐만 아니라 불편함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게 되었다.

CASE 23 여행경비 반환 및 손해배상

이 사례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유럽을 여행한 단체 관광객들이 휴가를 마치고 여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Consumer Claims Tribunal에 제소한 원고 측의 주장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본 건과 관련하여, 귀 재판소에서 본인의 주장내용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시고 아울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본인의 유럽여행은 A여행사가 주선한 것으로 다른 단체 관광객과 함께 여행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유럽여행 첫날, Coach를 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습니다.

Coach 에는 아무 편의시설이 없었으며 불결했고, 운전사는 운전에 미숙했으며 관광가이드는 아주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즉, 난폭운전으로 차 두 대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길가에서 먹이를 쪼던 두 마리의 닭을 치었으며, 도로상의 안내표지판은 물론 가로수를 스치고 갔으며, 결국 통행료를 받는 사무실마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행은 다섯 시간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달하여 녹초가 되었습니다.

유럽여행 둘째 날에는 파리(Paris)를 관광하는 일정으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는데, 결국은 첫째 날과 똑같은 난폭운전으로 트럭을 들이받아 미터를 깨뜨리고 터널의 벽을 스쳐지나가는 등의 전율할만한 두 시간에 걸친 운전으로 우리 일행은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우리 일행은 Coach회사 사장을 만나 안전운행을 촉구한 결과, 그 사장은 가이드 및 운전사의 미숙을 사과하고 다른 운전자 및 가이드로 대체하였습니다.

유럽여행 셋째 날, 우리 일행은 약속받은 데로 다른 운전사를 맞이하였는데, 출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운전자와 가이드는 서로 싸우고, 침을 뱉으며 고함을 치는 바람에 우리 일행은 당황하게 되고 이미 관광할 기분은 잡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안락한 수준의 호텔을 원했으나 그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호텔은 중심지에서 45분이나 달려야 되는 거리에 있었으며, 내부의 목욕탕에는 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서랍에는 부패된 과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펫은 얼룩자국이 뒤범벅되어 있었으며, 천장은 무엇이 떨어질 것 같이 금이 가 있었고, 매트리스 커버나 베게 커버는 아예 없었고 그나마 매트리스는 핏자국 및 기타 오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겨우 하룻밤을 묵고 다른 호텔을 배정받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호텔의 아침식사는 예상대로 엉망이었으며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운전사와 가이드의 지속적인 다툼에 우리 일행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특히 가이드는 가끔 술을 마시고 이미 우리 일행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 정도의 가이드를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도 아무 저항 없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마지막 여행일정 일에도 전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을 일삼았으며, 특히 규정 속도를 넘게 달리면서 옆의 승객과 계속 잡담을 하는 등 나중에는 우리 일행 모두의 신변이 걱정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티칸 궁전 등에 들어갈 때에도 사전에 옷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 결국 정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으며, St. Peters에서는 운전사의 실수로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Sistine 채플은 그 날은 문을 열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결과 우리 일행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결국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일행을 대표하여 본 내용을 귀 재판소에 검토하시길 원하는 바, 우리 생각은 이 모든 잘못이 여행사의 무계획하며 사기에 가까운 일정에 있다고 봄으로, 전적으로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일행은 이 여행을 위하여 20 여년을 기다려 왔으며, 앞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으로는 일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이 다시 할애될 것 같지 않은 점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Consumer Claims Tribunal은 일행 모두의 여행경비는 여행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손해배상으로 \$5,000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CASE 24 계약의무와 이행

Mr.Lee(가명)는 집 뒷뜰에 수영장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관련업소를 물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A를 선정하였다.

Mr.Lee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선금으로 \$500을 A에게 넘겨주었다.

Mr.Lee는 적어도 내년 여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섰기에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업자 A가 뒷뜰을 파보니 큰 구멍이 있어서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에 묻혀있던 철골을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이에 대한 Mr.Lee의 불만사항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다.

더욱 더 문제가 된 것은, Mr.Lee가 수영장을 갖지 못하게 된 점뿐만 아니라, 옆에 위치한 학교 교장인 Mr.James의 컴플레인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Mr.Lee는 다른 시공업자를 찾게 되었고 처음의 시공업자인 A에게는 더 이상 이 일에서 손을 떼 달라는 요구와 함께 선금 \$500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는 Mr.Lee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3,000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사항 중

계약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일을 중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는, 본 계약서에는 수영장 완성날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서 업자 A는 비록 일의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수영장을 완성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Mr.Lee와 A가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데 있었다.

더 이상 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자 Mr.Lee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지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

결과적으로, Mr.Lee는 수영장을 완성하는데 예상보다도 2년 이상 더 걸리게 되었지만 A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깨끗이 정리된 것에 만족을 하면서 위안을 삼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Mr.Lee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학교장인 Mr. James가 계속해서 학교의 철골을 사용한 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점이였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타협이 되지 않고 있어 Mr.Lee는 수영장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

즉,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지은 수영장을 결국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톡톡히 배우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CASE 25 계약에 대한 오해

Mr.Lee와 Ms.Kim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 오락시설을 갖춘 조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마한 방 하나를 세우기로 계획을 잡았다.

따라서 Mr.Lee와 Ms.Kim은 명성이 있는 건축업자 A에게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계획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

그 방은 대들보가 천장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대들보가 단단한 나무가 아닌데 있었다.

즉, 대들보가 설치되었을 때 그것은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물에 지나지 않았기에 Mr.Lee와 Ms.Kim은 건축업자 A에게 컴플레인을 하였다.

건축업자 A는 주장하기를, 대들보를 단단한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므로 대체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하며, 어떠한 고객도 그 비싼 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Mr.Lee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컴플레인을 하자 건축업자 A는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이나 \$1,000불 이상 더 들것이라고 부언하였다.

Mr.Lee는 이미 본 건과 관련하여 예산을 짜놓았고 Mr.Lee입장에서는 나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뽑아놓은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건축업자 A는 견적서에는 나무를 사용하는 조건이 들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상된 액수를 지불하기 전에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락시설을 위해 만들려고 했던 이 방은 두 번 공사를 해야 했으며, Mr.Lee가 구비하려 했던 가구시설은 예산상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분간은 이 방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본 사례는 양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오해 때문에 변호사 비

용 및 기타 공사비용의 손실이 발생한 대표적인 예인데, 사전에 계약서에 충분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ASE 26 손해배상

어떤 방앗간 주인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 커다란 저수지를 방앗간 옆에 설치하였다.

문제는 이 저수지의 물이 서서히 땅에 스며들어 결국은 방앗간 근처에 있는 탄광의 갱도가 물에 넘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 탄광의 사장은 방앗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방앗간 주인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방앗간 주인은 물의 범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탄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땅을 일구고, 수확하고, 보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위험부담으로 그것을 관리하여야만 한다.

본 사례에는 그와 같은 원리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CASE 27 동물과 손해배상

먼저 흔히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집 개가 아무리 험상궂고 항상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법에 호소할 수 없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웃집 개가 적법한 방문자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 개의 주인은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만일 개가 불법침입자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면 그 개의 주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소 법원이 취하는 태도가 틀리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Queensland 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에서는 개에 대한 특별 법률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개 이외의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주마다 조금씩 법률이 다르므로 사전에 체크를 요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개에 대해서는 지역카운슬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를 요한다.

개를 키울 경우 개의 나이, 자격증 여부, 개의 행동반경 등등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서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한 규정이 따르므로 상당히 실수를 많이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개 이외의 동물인 고양이 등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없이도 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집에서 키우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집에서 키우는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NSW 주에서는 개 이외의 동물이 그 동물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CASE 28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Mr.Hong(가명)은 A 항공회사의 파일럿로서 취업을 하였다.

A 항공회사는 Mr.Hong이 계약조건에 따라 파일럿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Mr.Hong 역시 이 계약조건에 합의를 하였다.

더 나아가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5 년간 A항공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합의를 하였다.

문제는 A 항공회사의 배려로 파일럿 자격증을 획득한 Mr.Hong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2 주일 만에 A 항공회사를 떠났다는데 있었다.

결국 A 항공회사는 Mr.Ho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Mr.Hong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A 회사에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Mr.Hong은 불복하여 A회사를 떠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Hong은 분명히 A 회사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A 회사의 비용으로 Mr.Hong이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여 파일럿 자격증까지 획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Mr.Hong은 당연히 A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CASE 29 부당해고

Mr.Kim(가명)은 석판공으로서 B 회사에 취업원서를 제출하였다.

취직 인터뷰에서 B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Mr.Kim 이 동판술(Etching)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Mr.Kim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B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하므로 Mr.Kim으로 하여금 그 직책을 맡도록 하였다.

따라서 Mr.Kim은 자기 분야와는 조금 다른 동판술 분야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나중에 Mr.Kim이 이 분야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B 회사는 Mr.Kim을 해고시켰다는데 있었다.

Mr.Kim은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Kim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인즉 B 회사는 분명히 Mr.Kim 입사시에 Mr.Kim이 본 분야와 관련된 필요한 자질 및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비록 Mr.Kim이 유사업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CASE 30 부당해고

Mr.Lee(가명)는 A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Joint Managing Director)로서 고용되었다.

Mr.Lee의 고용계약 기간은 5년이었는데. 고용 후 2년이 지나자 Mr.Lee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즉, 다른 사람이 혼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Mr.Lee는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Assistant Managing Director로서 남은 기간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봉급 수준 및 각종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Mr.Lee는 회사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현재의 지위 및 봉급 수준에 맞는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였다.

이 같은 수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가자 Mr.Lee는 할수 없이 전보다 좀 낮은 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Mr.Lee는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유로서는 부당해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A 회사는 Mr.Lee의 이 같은 주장을 긍정을 하면서도, Mr.Lee가 입은 손해액은 Mr.Lee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주장을 폈다.

즉, Mr.Lee는 A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또한 다른 자리를 찾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노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Lee는 A 회사가 나중에 제시한 지위에 대해 거절하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A 회사 이외에 다른 적절한 자리를 찾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본다.

고용주인 A 회사의 전례를 보건데, Mr.Lee가 A 회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기대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Mr.Lee는 고용계약상 잔여기간인 나머지 3년에 대한 손해배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손해액은 새로운 자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수준과 A 회사에 그대로 남아 일을 계속하였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의 차이만큼이 배상액으로서 신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CASE 31 피고용인의 중대한 복종의무위반

Mr.Kim(가명)은 마이클 부부의 정원사(Gardener)로서 고용되었는데, 평일에는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

어느 토요일 늦은 아침, 마이클 부인은 Mr.Kim으로 하여금 몇몇 식물들을 옮겨 심으라고 요청하였다.

Mr.Kim은 그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오에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있어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였고 덧붙여서 마이클 부인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반문하였다.

마이클부인이 Mr.Kim의 무례함을 꾸짖자 Mr.Kim은 맞장구를 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때 마이클 부인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여 Mr.Kim를 해고시켰다.

고용계약에 따르면 최소한 해고 전 3개월의 사전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바, Mr.Kim는 이를 근거로 하여 잔여 3개월간의 봉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Mr.Kim은 토요일 정오 이상까지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마이클부인에게 무례를 범함으로써 고용계약의 기본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다.

Mr.Kim의 행실이 해고 전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원의 판결이 마이클 부부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다.”

CASE 32 고용인의 의무

Mr.Park(가명)은 어려서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지만 카운슬 소속의 창고지기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Mr.Park이 망치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속조각이 그의 눈에 박히게 되었고, 따라서 Mr.Park은 완전 장님이 되었다.

Mr.Park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보호안경을 사전에 지급하였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주 역시 이에 맞서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다른 같은 직종의 직원들에게는 보호안경이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 본 사례에서는 Mr.Park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이유를 살펴볼 때, 고용주가 Mr.Park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함에 무리가 있을 수 없다.”

CASE 33 원인제공자와 그 책임범위

Mr.Kim(가명)은 A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공장 내에서 동료들을 짓궂게 하는 장난을 즐겨왔다.

어느 날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계속 심하게 장난을 하자 사장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충고를 하였다.

그러나 Mr.Kim은 계속 점심시간에 장난을 하다 결국은 동료인 Mr.Hudson을 다치게 하였다.

Mr.Hudson은 Mr.Kim을 상대로 하지 않고,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로서는 A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만족할만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Mr.Hudson의 제소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결국 Mr.Hudson의 승소로 끝나게 되었다.

CASE 34 원인제공자와 그 책임범위

B회사에 근무하는 두 명의 견습공이 장난으로 압축공기를 동료인 Mr.Park(가명)에게 주입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망하였다.

물론 그 두 명의 견습공들은 예전에 그와 같은 과실을 범한 적이 없었으나 B 회사의 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Mr.Park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견습공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며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CASE 35 고용인의 의무

Mr.Hong(가명)은 가구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문제는 가구를 만드는 경우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인데, Mr.Hong은 그 위험성에 대해 충고를 받거나 그를 방지하는 옷 또는 크림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었다.

결국 Mr.Hong은 피부염에 걸리게 되었고, 따라서 공장주인은 Mr.Hong에게 안전한 작업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전적으로 Mr.Hong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CASE 36 고용인의 책임범위

Mr.Kang(가명)은 Manly에 있는 어느 호텔의 Bar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단골손님인 Mr.Andrew와 언쟁을 벌이다 Mr.Kang이 집어던진 술잔에 눈을 다쳐 한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Mr.Andrew는 호텔의 소유주인 D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비록 Mr.Kang이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Mr.Kang의 현재 위치와 술잔을 집어던진 그 자체의 행위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고용주인 D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책임을 물을 경우 Mr.Kang 개인이 져야 할 것이므로, Mr.Andrew는 D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Mr.Kang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할 것이다.”

CASE 37 고용인의 책임범위

12살 먹은 어느 소년이 말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말은 D 회사 소속의 말로서 옆에 설탕가방이 달려 있었다.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으로 설탕가방에 술을 넣게 되었는데 이 말을 몰고 있는 Mr.A는 소년이 설탕가방을 가져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뒷덜미를 세게 후려쳤다.

따라서, 소년은 땅에 넘어지면서 발을 다치게 되었고 소년의 아버지는 말이 소속된 D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의무를 다하는 중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CASE 38 근로자배상

Mr.K(가명)는 고용주인 Mr.Smith의 작업장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내에서 피고용인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보통 관행이 되다시피 하였는데, 문제는 Mr.K가 음료수 병뚜껑을 따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책상모서리에 음료수 병 뚜껑부분을 놓고 주먹으로 내리친데 있었다.

결국 음료수 병뚜껑 부분은 박살이 났고, 그 파편이 튀겨 Mr.K의 왼쪽 눈을 강타하여 왼쪽 눈이 멀게 되었다.

이에 Mr.K는 근로자 배상(Worker's Compensation)을 청구하기에 이

르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K가 고용주의 작업장내에서 점식식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Mr.K가 눈을 다쳤을 당시 Mr.K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료수 병 뚜껑을 따게 되었고, 이 행위는 식사와 관련한 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r.K는 근로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CASE 39 근로자배상

어느 항공회사의 근로자들은 점심식사 시간을 30분밖에 갖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작업장을 떠나 식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손해를 본다는 회사 방침 때문이었다.

대체로 점심식사 시간에 근로자들은 크리켓게임을 즐겨왔다.

비록 게임은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없다는 경고 싸인이 붙어 있었지만 상당기간동안 무시되어 왔었고, 사실 고용주 역시 점심시간에 근로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게임을 즐기던 중 Mr.Choi(가명)가 볼을 잡으려 하다가 실족하여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이에 Mr.Choi는 근로자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고용주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유인즉 Mr.Choi의 상해는 근무와는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되었고, 오히려 개인의 오락을 즐기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고용주 역시 평상시 근로자들이 크리켓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킨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Mr.Choi가 근로자 배상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CASE 40 면책조항과 손해배상

1952년도에 발생한 사례로서, A여사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 ‘Himalaya’라는 명칭의 유람선에 몸을 싣게 되었다.

그녀가 배의 갑판에 올라 바다를 구경하고 있을 때 배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바람에 A여사는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다.

배의 회사는 이 사고가 일어나자 책임 면제를 스스로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한 책임면제를 대리인 및 선원 등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A여사는 분노하면서 배의 회사 사장, 선장 및 갑판장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의 면책조항(Exemption Clause)은 회사 사장이나 갑판장등을 보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나 갑판장등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상 회사 자체를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 주는 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CASE 41 계약성립과 배상

1892년 어떤 회사가 광고를 신문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Carbolic Smoke Ball’ 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가 14일 동안 사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유행성 감기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100파운드를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

Mrs.C는 광고내용대로 사용하였으나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Mrs.C는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미 그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은 계약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Offer)한 것이며, Mrs.C는 그를 수락(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Mrs.C가 반드시 그 청약을 수락하였다는 의사를 그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녀가 그 청약 내용대로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CASE 42 계약과 채무변제

Mr.J는 그의 아들 W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Promissory note를 받았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평소에 W는, Mr.J는 다른 식구들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자기에
게는 그렇지 않다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과적으로 Mr.J는 W의 불평에 못 이겨 W가 앞으로 불평을 하지 않
는다는 조건으로 Promissory Note를 폐기하겠다고 합의를 보았으며 따
라서 W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Mr.J가 사망하자, 유언집행인인 Mr.A는 W가 빌린 돈에 대해 채무변
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W는 주장하기를 아버지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은 바, 그 내용
은 W가 불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W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W의 불평중지가 과연 법적으로 일반 계약상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에 대해 심사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는 아버지인 Mr.J의 재정적인 일에 대해 어떠한 불평도 할
권리가 없다고 하겠다.

결국 W는 다른 유족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CASE 43 세입자의 권리와 반 인증차별

Dr.Andrew는 Rosebay에 소재하고 있는 그의 아파트를 세를 놓기로
하고, 부동산 업자인 Mr.John을 통해 입주자를 물색하였다.

마침 신문지상에 나타난 광고를 보고 찾아온 Mr.Kim(가명)과 그와
사실혼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있는 Mrs.Lee(가명)에게는 입주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 이유로서 Dr.Andrew 및 그의 Wife는 성공회(Anglican) 교인이며, 그들이 판단할 때 부도덕적인 상황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돈을 벌어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Mr.Kim과 Mrs.Lee를 부도덕한 상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입주를 거절하였다.

이에 불복한 Mr.Kim과 Mrs.Lee는 “반 인종차별위원회(Anti - Discrimination Tribunal)”에 제소하였다.

반 인종차별위원회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Mr.Kim과 Mrs.Lee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로 볼 때 명백하다.

따라서 Dr.Andrew와 부동산업자인 Mr.John은 Mr.Kim과 Mrs.Lee 두 부부가 다른 숙박 장소를 찾을 때 까지 입은 수입손실 \$450 및 이전 비용 \$120, 그리고 고통 및 모욕을 준 대가로 \$50을 배상하여야 한다.”

CASE 44 세입자의 의무

세입자(Tenant)인 Mr.Hong(가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Bond)를 찾으려고 집주인을 찾았다.

집주인은 Mr.Hong과 함께 집을 둘러보더니 오히려 Bond 비보다 많은 액수를 집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대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이들은 Rental Bond Board 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으나 계속 분쟁이 끊이지를 않자, 임대차 재판소인 Residential Tenancies Tribunal 에 정식 제소하였다.

판결은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Mr.Hong은 Bond 비 전액을 찾게 되었다.

“세입자는 모든 장소를 적절한 주의로서 관리 하여야만 한다.

온수, 보일러, 굴뚝, 창문, 전기, 싱크대 등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 되도록 해야만 하며, 더 나아가 집 자체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고의적이던 부주의로서 발생하였던 상관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세입자 가족 또는 손님들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로서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든지, 세입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다면 당연 세입자는 수리할 책임이 없다.”

CASE 45 고용기회와 성차별

호주의 유명한 대기업인 BHP의 계열회사인 Australian Iron & Steel 회사는 주요작업을 NSW 주의 Port Kembla에서 행하고 있었다.

1982년에 대규모의 경비절감을 이유로 감원선포가 일었는데, 그 주된 슬로건은 ‘Last On, First Off’이었다.

감원 대상 중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해고되었고, 그 중 약 34명에 달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수년전에도 남성근로자들은 Job선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은 반면에 여성근로자들은 대기명단에 올라있어야만 했다고 불평했다.

어떤 여성근로자는 자그마치 7 년간이나 대기자 명단에 머무르고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들은 1982 년도의 감원은 ‘성 차별(Sexual Discrimination)’에 기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기회균등에 관해 심판 하는 Equal Opportunity Tribunal은 여성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 1 Mil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여성근로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ASE 46 차별대우

Malinda는 15세 된 여학생으로서 Canterbury Girls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었는데, 반인종차별위원회(Anti-Discrimination Board)에 불만사항을 접수시켰다.

그 이유로서는 Malinda의 쌍둥이 동생인 Rhys는 이웃하고 있는 Canterbury Boys High School의 학생인데 Malinda는 그 동생이 선택한 똑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즉, Malinda는 산업미술과 관련한 기술 및 기술도면에 관한 과목을 공부할 수 없어서 대신 가정경제와 관련된 과목 예를 들면, 가정학, 의상 디자인 등으로서 그 과목들에 대한 선입관으로서 ‘여성들은 장래의 주부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장차 이득을 얻어야만 하는 가정학을 기술과목보다 우선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관념론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서 들었다.

NSW 주의 Equal Opportunity Tribunal 및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Malinda에게 부여된 과목은 그녀 동생인 Rhys의 과목들보다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차별대우’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CASE 47 성차별과 인권

인권위원회(Human Right Commission)는 골프 회원권을 가진 여성골퍼들에게도 남성골퍼들처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Brisbane 근처에 있는 Keperra Country Golf Club은 토요일 골프를 치는 명단에서 남성 골퍼들과 같은 똑같은 기회를 여성 골퍼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 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즉, '여성 골퍼들에게는 토요일에는 겨우 6:00 AM부터 9:00 AM 그리고 11:00 AM부터 1:00 PM 이렇게 두 차례 밖에 시간배정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약 14명에 달하는 여성 골퍼들로부터 불평이 야기된 것이, 결국은 상기 Commission에 제소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CASE 48 차별행위

어떤 젊은 여성이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3년 동안은 아무 불평 없이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로 발령받게 되어 다른 관리자를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

그 관리자는 계속해서 연애편지를 그 녀에게 보냈고 수없이 그 녀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 녀는 이러한 상황이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녀의 이러한 반응이 실제로는 승낙을 하고자 하는 진심을 숨기는 것으로 여겼다.

어떤 때에는 그는 자기의 별거벗은 모습을 그린 그림에 그 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 녀의 작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 녀가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냉담한 반응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 녀는 반차별위원회(Anti-Discrimination Board)에 제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녀는 배상액으로 \$5,000을 받았다.

CASE 49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

Mr.M은 뉴카슬에 소재하고 있는 G.L. 클럽에 갔다.

Mr.M은 동성연애자로 익히 알려져 있었으므로 클럽에서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었다.

이에 Mr.M은 기회균등재판소(Equal Opportunity Tribunal)에 제소하였는데, 그 이유로서는 그가 단순히 동성연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클럽에서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Equal Opportunity Tribunal은 GL클럽은 Mr.M에게 \$200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ASE 50 청각장애인과 차별

한 젊은 청년이 시청에 소속된 극단(Council Theatrical Group)에 견습 영화배우(Trainee Actor)로 지망을 하였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문제는 이 청년은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신체검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채용이 되었는데, 후에 그 청년은 신체검사에서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일자리가 거절되었다.

청년은 제소를 한 후 조정을 거쳐 그 자리에 다시 복직되었다.

CASE 51 채용과 성차별

Ms. Wardley는 A 항공사에 견습 파일로트로서 직장을 찾았으나,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휴가를 가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비행연습실에서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당했다.

일상적으로 그 자리는 두 파일로트가 있어서, 만일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다.

빅토리아에 있는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y Board)는 그녀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A 항공사가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A 항공사는 결국 동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그녀가 받지 못한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함과 동시에, 다음 번 견습 파일로트를 모집할 시에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우선 부여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했다.

Ms. Wardley는 수 년 동안 성공한 파일로트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CASE 52 임명과 인종차별

Dr.A는 빅토리아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in Victoria)의 결정에 따라 정신과 책임자로서 임명이 되지 못하였다.

그 자리는 결국 Dr.P에게 돌아가자, Dr.A는 인종차별에 입각한 임명이라고 기회균등위원회에 제소하였다.

후에 동 위원회는 조사 결과 Dr.A가 Dr.P보다 훨씬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의사임을 알게 되었다.

즉, Dr.A는 Dr.P 보다도 G.P.로서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분야에서는 10년이나 더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Dr.A는 정신과 의사로서 자문역을 해 오고 있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멤버로서 10여년의 경력 및 동 대학들에서 5년간에 걸친 교수직을 수행해 오고 있었고, 더 나아가 과거 6개월간은 정신과 책임자 대행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

Dr.A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000 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보건성은 Dr.A에게 정신과 책임자 자리를 부여하던지 아니면 다른 주요 의과 대학의 동등한 자리를 부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나, 동 결정은 후에 항소(Appeal)에 의해 번복 되었다.

CASE 53 차별대우

16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사무보조원 겸 전화 교환수로 근무해 오던 어떤 여성이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y Board)에 다음과 같이 제소하였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즉, 회사 측은 그 녀로 하여금 6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조기 은퇴 (Pre-retirement Leave)를 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제소내용이었다.

모든 고용인들에게 서로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은퇴 및 연금 제도(New Retirement & Super annuation scheme)가 그녀가 직장을 떠난 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고 그 녀는 주장하였다.

또한 그 녀는 과거 5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새로운 제도 하에서 본인에게 적용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불이익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62세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결국 조사(Investigation)가 진행된 후 그 제소내용은 조정을 거쳐 \$45,000의 손해배상을 그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CASE 54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

연방 최고법원인 High Court에서 종결된 사례로서, 도둑들이 어떤 농부집에 설치된 탱크에서 계속적으로 휘발유를 훔친 사건이 있었다.

물론 농부의 보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을 하였지만 도둑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농부는 도둑을 잡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파고 누워서 도둑이 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어떤 사내가 차를 몰고 농부집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더니 휘발유를 훔치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켰다.

농부는 그 사내가 휘발유를 훔쳐가는 것을 목격한 후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차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으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농부는 운전석 옆에 있는 16세 되는 소녀를 다치게 하였고 따라서 소녀는 농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 농부가 엽총을 발사할 당시에는 그 소녀가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은 농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그 당시 그 소녀는 차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앞좌석에 길게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농부가 쏜 총알이 그 소녀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배심원들은 농부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소녀에게도 부분적이거나 상해를 입힌 결과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분담시킨 바, 그 차는 분명히 불법목적으로 농부의 집 영내를 침범하였고, 더 나아가 그 소녀는 그 불법목적을 행하고 있는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농부는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항소심으로 끌고 나갔다.

항소심에서는 그 소녀를 명백히 무단 불법침입자로 규정하였고, 농부가 사전에 소녀가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주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녀는 이에 불복하여 호주 연방최고법원인 High Court에 상고를 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소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농부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엽총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농부는 차에 누군가 타고 있으리라는 예견을 하여야 만하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그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야기 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 또한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농부가 그 누군가를 볼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CASE 55 명예훼손

Mr.Kim(가명)은 Mr.Smith가 운영하는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Mr.Kim과 Mr.Smith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사실이었다.

Mr.Kim은 참다못해 4 주 통보를 주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며칠이 지난 후 Mr.Smith는 바로 2 시간 내에 호텔을 떠나지 않으면 개를 풀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Mr.Kim은 다른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 분주하게 서둘렀고, 따라서 다른 호텔에서 Mr.Smith에게 Mr.Kim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자 Mr.Smith는 Mr.Kim은 정직하지 않고 도벽이 심하며 따라서 취직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더 나아가 Mr.Smith는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 Mr.Kim이 해고된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통보를 해주었다.

결국 Mr.Kim은 어떠한 호텔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 또한 사회보장성으로부터의 실업수당마저 끊기게 되었다.

Mr.Kim은 Mr.Smit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판결은

다음과 같다.

“Mr.Smith의 Mr.Kim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백함으로, 손해배상으로 \$127,000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ASE 56 채권추심과 협박. 무단침입

Ms.Kim(가명)은 세탁기 판매업자에게 잔금 \$160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잔금을 받기 위해 판매업소 직원이 아침 7시 30분에 전화를 걸면서 잔금 \$160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 직원은 만일 그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Ms.Kim의 가재도구 또는 자동차 등록서류를 갖고 가겠다고 위협하였다.

Ms.Kim은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 때문에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이게 되어 Ms.Kim은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충분치 못하므로 있는 대로 일단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직원이 들이닥치면서 Ms.Kim이 완불할 때까지 응접실에 앉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Ms.Kim을 뒤로하고 바로 응접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Ms.Kim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Ms.Park에게 돈을 빌린 후 일단 \$160을 변제하였다.

이 후에 Ms.Kim은 세탁기 판매업소를 상대로 협박 및 무단침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본 조사와 관련 Ms.Kim의 세탁기 판매업소에 대한 \$160의 채무는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그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Ms.Kim의 집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올 권리는 없으며, 더 나아가서 Ms.Kim의 가재도구를 갖고 가겠다고 위협할 권리 또한 없으므로 Ms.Kim의 제소 이유는 타당하고, 판매업소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CASE 57 비밀유지의무와 명예훼손

Ms.Kim(가명)은 남편이 사망한 후 8 개월째에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 녀의 산부인과 의사인 Dr.A는 그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녀 역시 또한 오빠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문제는 그 오빠는 Ms.Kim과 친척관계에 있었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친척오빠는 Ms.Kim의 행위에 분노를 표하면서, Ms.Kim에게 간간히 도와주던 물질적 도움까지 끊게 되었다.

Ms.Kim은 Dr.A 및 그 아내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고, \$10,000을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었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Dr.A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더 나아가서 가족적인 사적인 감정이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의무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CASE 58 명예훼손

1983년에 발생한 사례로서, Ian Rice는 당시 Carlton 풋볼 팀의 회장이었는데 팀의 보수분쟁(Pay Disputes)과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인 Stan Waites는 Carlton Man이 아니고 Collingwood Man이라는 실언을 TV 대담에서 하였다.

그 날은 바로 Carlton팀과 Collingwood팀의 결승전 전야였기 때문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Mr. Waites 변호사는 비록 수많은 팀으로부터 여러 선수들을 위해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본인에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Mr. Waites는 승소하여 \$36,000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CASE 59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John Andrew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호주 건축가이다.

1978년 Melbourne Herald, Sydney Morning Herald 및 Brisbane Telegraph신문들은 연방정부를 위해 Mr.Andrew가 디자인하고 시공한 복합건물에 대한 기사를 앞을 다투어 게재하였다.

그 신문의 기사 제목은 ‘One Government Leak is Caught in Buckets’였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나갔다.

“정부의 보험담당관은 작년에 완성된 \$43,400,000짜리 Cameron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Office Centre가 결국은 행정적인 잘못으로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 다른 고위 정부관리 역시 언급하기를 240개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매일 그 많은 사무실을 열었다 잠갔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이 계속 새고 있다.

그 누수현상(leaks)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천장을 통해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다.

이 복합빌딩에서 일하는 몇몇 공무원들은 천장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플라스틱 버킷을 가져와야만 하는 실정이다.

매번 그 공무원들은 물새는 곳을 막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물이 다시 새곤 하였다.

이 사실은 마치 Sydney Harbour Bridge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끝없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Mr.Andrew의 이름은 신문기사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기 신문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결국 무능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비록 Mr.Andrew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이번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 기술자 및 측량사들과 주요 건물들을 디자인 하고 감독하는 일과 관련된 정부 관료 및 기타 기업체 간부들은 즉시 Mr. Andrew 및 그의 회사가 신문기사에 나타난 ‘심각한 하자(Defects)’에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자로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오보이다.

재판결과 Mr.Andrew는, 비록 나중에 3/4로 깎이고 말았지만, 처음

단계에 \$480,000을 배상으로 받게 되었다.

CASE 60 신문사의 명예훼손

1920년대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례로서, 영국의 Daily Mirror는 Mr.Cassidy의 딸 경주 사진과 함께 “Miss X와의 동거 사실이 발표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Mr.Cassidy는 실제로 사생활이 문란하였으며, 신문사는 허위이름으로 상기 내용을 흘려보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Mr.Cassidy는 이미 결혼을 하였었고, 신문사는 그 당시 그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었다.

그의 wife는 결국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그 이유로서는 신문제목은 마치 그녀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단순한 정부로서 느껴 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상 모략적 이라는 것을 들었다.

주위의 친구들 역시 신문제목은 마치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거를 냈다.

Mrs.Cassidy는 배상으로서 £500를 받게 되었다.

CASE 61 명예훼손죄

“.....Mr.A는 wife가 아닌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의 행실로 보아서 그가 교회 구역장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그는 더 나아가서 여성들과의 사교모임에서 성스럽지 못한 만족, 기쁨을 그려내고 있었다.....”

상기 기사내용은 신문사 기자가 꾸며낸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S신문사에서 한때 편집을 보았던 Mr.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 구역장도 아니었고, 기사에서 언급한 지역에 산적도 없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

문제는 Mr.A는 S신문이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읽은 수많은 지역 구민들은 그 기사속의 Mr.A는 틀림없이 실제의 Mr.A일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Mr.A는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를 한 바,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예훼손죄로 제소를 당한 피고는 비록 피고가 원고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이 마음속으로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아니면 외향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간에 그 사실을 입증 했다고 해서, 원고에게 실제로 이뤄진 명예훼손(Defamation)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CASE 62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

만화가인 Mr.P는 호주의 유명한 건축가인 Mr.H가 디자인한 건물을 묘사하는 만화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 만화는 냉장고를 연상케 하는 직사각형 상자들로 점철된 황량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 상자 모양에는 단지 두개의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그 것을 통해

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찌꺼기는 다른 쪽을 통해서 버려지는 모습을 풍자하였다.

그 만화의 전경에는 ‘Mr.H의 은퇴공원’이라는 제목을 표기하였다.

Mr.H는 만화가인 Mr.P와 발행인인 Mr.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그 이유로서는 ‘그 만화내용이 Mr.H가 마치 야만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미술적인 감각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건축가로서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므로, 이는 틀림없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들었다.

Mr.P와 발행인인 Mr.J는 만화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공평하다고 맞서 싸웠다.

더 나아가서 피고들은 Mr.H가 디자인한 잘 알려진 건물 몇몇을 예로써 언급하였다.

법정에서의 배심원들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만화내용은 결코 Mr.H를 야만적이며 반사회적 또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술적인 감각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부분이 적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만화내용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Mr.H는 패소하고 말았다.

CASE 63 신문기사와 명예훼손

‘Observer’ 신문은 ‘부정부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독점기사’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기사 중간에는 유명한 정치인인 Mr.R.Maudling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비록 신문기사 내용은 Mr.R.Maudling은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MP)와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을 하였으나, Mr.R.Maudling은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그 사진의 위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Mr.R.Maudling 역시 부패한 정치인 중의 하나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신문사는 당연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법리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64 법정모독

‘National Times’ 신문의 기자인 Wendy는 형사인 Roger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기소되었다.

그 기사는 Roger가 뇌물죄로 기소된 후 아침 신문에 실렸는데, 그 제목은 ‘형사 Roger와 경찰의 바비큐세트(Detective Roger and the Police Barbecue set)’이었다.

그 기사는 Roger의 뇌물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활동 등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기소 취지는 신문기사 내용이 판사나 배심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끔 하였다는 데 있었다.

Roger는 결국 면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뇌물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NSW주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세 명의 배석판사는 Wendy

에게는 법정모독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비록 신문기사는 Roger를 기소한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실렸지만, 실제로 그 시점은 재판 진행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신문기사 내용이 실린 시점은 재판이 열리기 7 개월 전이며, Roger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여러 신문 기사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였다.

물론 법원의 판시 내용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데, 즉 신문기사 내용이 배심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 7개월 후에 열린 공정한 재판에 편견을 가져다주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법원의 판결내용 중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발행할 자유 및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공익(Public Interest)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정의를 적용,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모든 간섭이 반드시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공익(Public Interest)은 법원의 위엄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며 또한 그 집행과정 역시 그런 각도에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를 집행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 역시 그러해야 한다...”

“...공평분배한 정의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공익은 매우 위대한 것이라 칭할지라도, 그렇다고 반드시 지상 최고의 것일 수는 없다...간혹 다른 공익들은 공평 분배한 형사 또는 민사사건과 관련한 공익보다 우선한다...”

“...정의의 집행과 관련한 공익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적인 일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을 거론한다거나,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에 밀접한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공익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ASE 65 **살인죄**

Mr.G는 라이플 클럽 회원이었다.

그 클럽의 규칙은 모든 회원은 일단 사격연습이 끝나면 반드시 라이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Mr.G는 사격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라이플과 탄창 6개를 소지하고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Mr.G는 동생인 J와 동생친구인 H와 함께 다른 친구 집을 방문하였다.

Mr.G는 친구에게 사격연습을 할 수 있는 목표물을 부탁하였고 그 친구는 판자를 나무에 고정시켜 사격 목표물로 하였다.

Mr.G와 J 그리고 H는 100m 쯤 언덕을 올라가 차례로 목표물을 향하여 사격을 개시하였다.

사격이 각각 한 차례씩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이 황급히 달려오면서 사격을 중지하라고 요청하였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10살 된 아들이 사격 장소로부터 400m 떨어진 사과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다.

결국 세 사람이 쏜 총탄 중 어느 한발에 그 소년은 사망하고 말았다.

세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들 역시 사격을 한번 썩 했다고 시인했다.

Mr.G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소년을 죽게 한 총탄은 자기가 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세 사람 모두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법정에서 그 라이플의 사정거리는 950m 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또한 사격장소는 일반 도로와 정원에 밀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세 사람이 쏜 세발 중 오직 한 발만이 소년을 죽게 한 사실이었다.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구하였다.

이유로는 만일 세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면 그 행위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라이플은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들었다.

CASE 66 의사의 과실

Mr.Ko(가명)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당시 Mr.Ko를 진찰하였던 의사는 그가 중상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다음 날 Mr.Ko는 사망하였다.

Mr.Ko는 자그마치 갈비뼈가 18 군데 부러졌고, 쇄골이 부서졌으며, 폐가 출혈이 되었다.

의사는 Mr.Ko의 가족에 의해 제소되었다.

의사는 말하기를, 그 당시 Mr.Ko는 사고경위를 정확히 말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고, 또한 고통에 대해서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기 때문에 증세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결과는 의사의 과실로 결론이 났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그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의사는 환자를 면밀하게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으로 볼 때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CASE 67 환자의 동의

A박사는 김 여사의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술 도중 A박사는 김 여사의 자궁에 종양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종양은 그 당시 위험 수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만일 김 여사가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할 경우 장래의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킬 소지가 충분하였다.

이에 A박사는 그 수술이 끝나기 전에 김 여사의 나팔관을 봉해 버림으로써 김 여사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김 여사는 A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A박사는 김 여사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유로서는, 비록 그 수술 중에 나팔관을 봉하는 것이 의학상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그렇게 하여야만 할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할 경우였다면 반드시 김 여사의 ‘일반 동의 각서(General Consent Form)’를 얻을 때 까지 연기하였어야만 했다.”

CASE 68 의사의 직무태만

양 여사는 일반 신경안정제인 Lexotan에 중독 되어 환각상태 및 경련 등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양 여사는 정신과 의사인 B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심한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B박사와 상담한 후 그가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한 결과 상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B박사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또한 이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양 여사는 이유를 덧붙였다.

결국 양 여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서는 너무도 통증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B박사는 양 여사에게 5만 불에 달하는 손해 배상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이 명백히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거 즉, 입증자료 없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법언으로는 이를 ‘res ipsa loquitur’라 하는데, ‘사실은 자체 증명력을 갖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호주 법원에서는 판결시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에 근거를 비중있게 두고 있으므로, 항상 입증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CASE 69 의사의 부주의

이 여사는 배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G박사에게서 받게 되었다.

이번 수술은 아주 쉽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G박사는 이 여사에게 확신을 시켜주었다.

G박사에 의하면 이 여사는 병원에 45일만 입원해 있으면 된다고 했으나, 결과가 나빠 수술로 인한 상처가 짙어 버려 결국 2달을 입원해야 했다.

G박사가 행한 수술은 추한 흉터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여사는 G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로서는 G박사가 사전에 지방질 제거수술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들었다.

덧붙여서 G박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서는 지방질을 너무나 견고하게 껴맸기 때문에 그녀가 걸을 때마다 몸이 굽혀진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이 여사는 G박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및 경험을 겸비한 의사들의 수준 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여사는 G박사로부터 5 만불 상당의 합의금 및 소송비용을 받아내었다.

CASE 70 의사의 직무태만

김 여사에게는 9살 된 딸이 있었는데 출산 과정에서 장애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병원 의사는 분만실에서 분만을 도우는 과정에서 집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다른 층에 있는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지금의 딸을 분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문제는 의사가 집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김 여사가 주장하고 나선데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아이의 심장 박동 등을 사전에 모니터로 확인하였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경우에 그 기술을 분만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수술실에서 사용하였으면 실패하였을 경우라도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실행할 수 있었고, 최소한 5~10 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비정상 분만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딸은 그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법원에서는 김 여사 및 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480,000을 인정하였다.

CASE 71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1986년 빅토리아 주에서 일어난 사례로서, 어느 병원에서 불치병인 Spina Bifida로 고생하는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대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최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게 되었다.

주장의 내용은 아이의 분만 후 2-3일간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왔기 때문에 아이가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아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병원으로 하여금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부모, 의사 또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장애인일지언정 그 아이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을 수는 없고, 또한 그러한 권한도 없다고 할 것이다.

법 그 자체는 명백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단순하다.

그러나, 법 그 자체로서 상기 언급한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CASE 72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

김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왔었다.

어느 날 김씨가 운전을 하고 있던 중 경찰의 통제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결국 두 사람을 치었다.

김씨는 사고 후 한 달간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판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김씨에 대한 형사입건문제는 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한 두 명의 보행자들은 김씨를 과실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김씨가 사고당일 당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정신이상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동시에 그 상황을 벗

어나려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김씨의 정신이상 상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면제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 참작되므로 김씨는 당연히 두 명의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CASE 73 유언서의 법적효력

Mr.K 는 공군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파일럿이었다.

1980년 Mr.K 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Mr.K 재산 모두를 Miss. L 에게 남긴다는 것이었고, 한편 Miss.L 을 약혼녀라고 유언장에 적어 넣었다.

그들은 결국 그 다음해인 1981년 7월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Mr.K 는 한 달 후인 1981년 8월에 비행연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문제는 유언서의 법적효력에 있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약혼녀’ 라는 단어 그 자체의 사용은 결혼이라는 법적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유언서 작성이라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약혼녀라는 단어의 사용은 결국은 정식 결혼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약혼 당시 작성된 유언서의 효력은 결국 결혼 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CASE 74 별거의 의미해석

A와 B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누려왔다.

A와 B는 재정적 이유로 같은 집에서 살아왔으나 실제로 마지막 18개월은 별거에 들어갔다. 즉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각기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고, 특히 서로 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문제는 A가 이혼을 원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였다. 왜냐하면 A와 B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관계(Sexual Intercourse)를 가끔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혼은 결혼의 법적종료(Legal end)를 의미한다. 결국 이혼은 수습할 수 없는 결혼의 파경을 요구할 뿐이다.

A는 한 지붕 밑에서 서로 각각의 삶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성관계였다.

따라서 A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일 B가 이혼하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관계 측면에서 볼 때 별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측면이었다.

결과적으로 A의 case는 결국 가족법(Family Law Act)에 나와 있는 '별거'의 의미해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별거의 의미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별거는 신체적인 별거 뿐 만아니라 정신적인 요소 즉, 실제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CASE 75 혼인무효 확인소송

Mr.L 과 Ms.K 가 교회에서 성대히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Mr.L 은 결혼서약이 있는 후 바로 신부인 Ms.K 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때, Ms. K 는 갑자기 반지를 벗어 던지면서 “나는 당신 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한 후 교회에서 쏘살같이 뛰어나갔다.

따라서 교회목사는 주례자격으로서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Mr. L 과 Ms. K 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선포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결혼식은 결혼서약만 있는 후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중에 Ms. K 는 ‘혼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결혼식에서 주례가 공식적으로 부부됨을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서약이 틀림없이 있었고, 이는 결국 법적선서로 간주되므로 당사자인 Mr. L 과 Mr. K 의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법적부부임에 하등 이상이 없다.”

CASE 76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권리

Mr.K와 Ms.L은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다.

부부간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성격차이를 이유로 끝내는 별거(Separation)를 하게 되었고 Ms,L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문제는 두 자녀의 양육은 Ms.L이 맡게 되었으나 별거 후에도 Mr.K는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계속 자녀들을 방문하여 용돈도 주고 잘 대해주었으며 자녀들 역시 잘 따랐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Ms.L과 새 남편은 Mr.K의 방문이 새로운 결합에 이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입양(Adoption)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Mr.K는 자기의 방문이 결코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입양 그 자체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입양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Mr.K의 방문 등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새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이해관계로 등장하기 때문에, 전 아버지인 Mr.K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이 될 수 없다.

대신 부모들에게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되 전 아버지인 Mr.K에게는 1년에 10일 동안 연속 방문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CASE 77 혼인중의 자

Mr.A 와 Ms.B는 결혼 후 성격차이를 이유로 1986년에 별거하였다.

당시 부부간에는 C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Ms.B와 함께 살게 되었다.

별거 후 3년이 지날 즈음 남편인 Mr.A의 직장이 Ms.B의 거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따라서 Mr.A는 아들인 C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 방문하였다.

Mr.A는 일 주일간 Ms.B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당사자간에는 결혼 상태를 다시 지속시키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도 부부관계를 가졌다.

남편인 Mr.A의 표현을 빌자면 그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 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Ms.B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D를 낳았다.

더욱 더 복잡한 문제는 Ms.B는 Mr.A와 별거 후 다른 남자인 Mr.H 사이에 K를 낳았다.

따라서 Mr.A와 Ms.B 관계에서 태어난 C와 D 그리고 Mr.H와 Ms.B 사이에 태어난 K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C가 Mr.A와 Ms.B의 자식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D역시 C와 같은 입장이라 할 것이다.

물론 D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Mr.A와 Ms.B가 지속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법적인 결혼상태는 계속 유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에 대한 것인데, K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최소한도 법적인 안정성 및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K는 Mr.A와 Ms.B의 법적인 결혼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중의 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CASE 78 유언서의 효력

A는 자식하나 없는 홀아비였는데 1976년 8월에 A의 모든 유산을 그의 처제한테 넘겨주겠다는 유언서(Will)를 작성하였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1982년 A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유언서를 되찾았는데, 그 이유로서는 그가 남길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고, 따라서 유언서를 없애버릴 작정이었다.

1983년 A의 누나가 유언 없이 사망했으며, 그녀의 유산인 \$8 Mil이 A앞으로 법적으로 분배되었다.

문제는 A 역시 1986년에 사망했는데 어떠한 유언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얼마 후에 A의 처제는 1976년 당시 유언서의 사본을 근거로 그 유언서 내용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A는 본인 자신이 남길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그 유언서를 취소하였으나, 결국 법적으로 A의 유산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1976년 당시의 유언서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다..”

CASE 79 '약혼(Engagement)'과 '결혼(Marriage)'의 법적지위

1970년 9월 Mr.A는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4 Mil에 상당하는 일부재산을 Mr.A의 약혼녀인 Ms.B에게 남긴다는 것이었다.

1970년 11월 Mr.A와 Ms.B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2년 후인 1972년에 Mr.A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문제는 만일 1970년 Mr.A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Ms.B는 그 유언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4 Mil에 상당하는 일부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나,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만일 약혼 당시의 유언이 정식 결혼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Ms.B는 Mr.A의 전 재산인 \$8 Mil에 상당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Ms.B와 Mr.A의 친척들은 Mr.A의 재산을 놓고 격론을 펴게 되었는데, Ms.B는 1970년 약혼당시의 유언은 당연히 취소되었다는 주장이고, 반면에 Mr.A의 친척들의 주장은 1970년 당시의 유언은 결혼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970년 당시 유언장에 나와 있는 약혼녀(Fiancee)라는 단어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결혼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이유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Mr.A는 결혼 후 유언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Ms.B는 Mr.A의 전 재산인 \$8 Mil에 상당하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하등 잘못이 없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만든지 / 내용문의

James RHEE

- KOTRA Invest KOREA 투자컨설팅팀 법률전문위원
- 주한 호주-뉴질랜드상공회의소(ANZCCK) 회원
- 호주 시민권자

▶ 최종학력

- 호주 시드니법대(SAB 코스)

▶ 주요경력

- 현대전자(하이닉스)법제팀
- 호주 GIBSONS 변호사사무실
- 호주 JSL 투자자문회사(대표)
- 법무법인 신화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 137-749)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화

- 82-2-3460-7646

▶ 팩스

- 82-2-3460-7944/7949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www.investkorea.org

면책조항

본 책자를 쓸 때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그 자체는 복잡다단하여 본 책자의 성격상 법적인 정확성에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음. 본 책자는 참고용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호주법에 대해 공식적인 법률상담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호주법에 대한 법적지문은 해당분야별 전문변호사로부터 구하기 바람. 만일 본 책자의 내용 및 정보를 믿고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KOTR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발행일 : 2004년 12월 11일

발행인 : 오 영 교

편집인 : 정 동 식

발행처 : K O T R A

인쇄처 : 학림사(☎ 752-0463)

가격 : 10,000원